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1183-10

www.mohw.go.kr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CONTENTS

01 기초연금 개요 / 1

- I. 기초연금제도 개요 3
- II. 기초연금 업무흐름도 10

02 신청 / 15

- I. 신청권자 17
 - 1. 수급희망자 17
 - 2. 대리인 17
-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
 - 1. 신청방법 20
 - 2. 신청기간 20
- III. 신청 구비 서류 21
 - 1. 필수 제출서류 21
 - 2. 추가 제출서류 22
- IV. 신청서 작성·상담 23
 - 1.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23
 - 2. 신청 상담 25
- V.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30
 - 1.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30
 - 2. 이력관리 신청 절차 30
 -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31
- VI. 접 수 33



0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 35

- I. 수급자 선정 개요 37
 - 1. 선정 기준 37
 - 2. 수급자 선정 업무흐름도 40
- II. 조사의 개요 41
 - 1. 조사의 원칙 41
 -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42
 - 3. 조사의 종류 43
 - 4. 자료의 제출 요구 46
- III. 조사 가구 유형 확정 48
 - 1. 개요 48
 - 2. 조사가구 유형 48
 - 3. 가구구성 및 조사방안 48
- IV. 소득조사 51
 - 1. 소득의 의미 51
 - 2. 소득 산정기준 51
 -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52
 -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59
- V. 재산조사 61
 - 1. 재산의 소득환산액 61
 - 2. 재산의 종류 62
 - 3. 재산가액 산정기준 63
 -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64
 - 5. 부채 83

: CONTENTS

| | |
|---------------------------|----|
| VI.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 87 |
| 1. 직역연금 수급권자별 대상 구분 | 87 |
| 2. 직역연금 조회결과 적용 | 89 |
| VII. 수급가구 유형 확정 | 90 |
| 1. 단독가구 | 90 |
| 2. 부부 1인 수급가구 | 90 |
| 3. 부부 2인 수급가구 | 90 |

04

기초연금액 결정 / 91

| | |
|--------------------------------------|-----|
| I. 개요 | 93 |
| 1. 업무 개요 | 93 |
| 2.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94 |
| II.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 96 |
| 1. 산식 개요 | 96 |
| 2. 기준연금액 | 96 |
| 3. 부가연금액 | 97 |
| 4.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 97 |
| III. 기초연금액의 산정 | 98 |
| 1.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 98 |
|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 99 |
| 3.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 101 |
|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 101 |



| | |
|---|-----|
| IV. 기초연금액의 감액 | 102 |
| 1. 부부감액 | 102 |
| 2. 소득역전방지 감액 | 102 |
| 3.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 103 |
| 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107 |
|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 107 |
|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 108 |
| 3.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 108 |
|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 110 |
| 5.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기준 | 111 |
| 6.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 115 |

0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 127

| | |
|-----------------------------|-----|
| I. 지급 결정 및 통지 | 129 |
| 1. 지급 결정 | 129 |
| 2. 결정 통지 | 129 |
| II. 기초연금의 지급 | 131 |
| 1. 지급 방식 | 131 |
|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 133 |
| III. 미지급 기초연금 | 134 |
| 1. 개요 | 134 |
| 2. 청구권자 | 134 |
| 3. 청구절차 | 135 |
|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 136 |

: CONTENTS

| | |
|-----------------------------------|-----|
| IV. 수급권의 보호 | 136 |
| 1. 원칙 | 136 |
| 2.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 행복지킴이 통장) | 136 |

0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139

| | |
|-------------------------------|-----|
| I. 이의신청 | 141 |
| 1.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 141 |
| 2.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 141 |
| 3. 이의신청 기한 | 141 |
| 4. 이의신청 절차 | 142 |
| 5.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 143 |
| 6.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 143 |
| II.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44 |
| 1.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 144 |
| 2.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 144 |
| 3.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 144 |
| 4.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 145 |
| 5.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 145 |
| III. 행정심판 | 146 |
| 1. 행정심판의 개요 | 146 |
|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146 |
| 3. 심판청구서의 제출 | 147 |
|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 147 |
| 5. 재결에 대한 불복 | 147 |



07 수급자 관리 / 149

| | |
|----------------------------|-----|
| I. 수급자 사후관리 | 151 |
| 1. 사후관리 개요 | 152 |
| 2.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 153 |
| 3.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 155 |
| II.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 | 168 |
| 1.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의 개요 | 169 |
| 2. 환수금의 결정 | 169 |
| 3. 환수금 징수절차 | 174 |
| 4. 소멸시효 | 175 |
| 5. 결손처분 | 175 |
| III. 부당수급자 관리 | 177 |
| 1. 과태료부과 | 178 |
| 2. 벌칙 | 180 |
| IV.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 181 |

08 국가부담금의 관리 / 183

| | |
|-------------------------|-----|
| I. 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 185 |
|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 185 |
| 2. 부담금 집행 및 정산 | 186 |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192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196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197

(서식 4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199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00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208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211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23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24

(서식 10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25

(서식 11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226

(서식 12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27

(서식 13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29

(서식 14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31

(서식 15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33

(서식 16호)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34

(서식 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요청서 235

(서식 18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36

(서식 19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37

(서식 20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38

(서식 21호) 사용대차확인서 239

(서식 22호) 현장 조사서 240



10

부록 / 241

| | |
|--------------------------------|-----|
|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 243 |
|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248 |
| III.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249 |
| IV.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 253 |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1) 기초연금 제도개요 및 신청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기준 변동 (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16년) :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2,000\text{만원})-\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text{연}4\%) \div 12\text{개월}\} + P^{***}$ $= \{0.7 \times (\text{근로소득}-56\text{만원})\}^* + \text{기타소득}^{**}$ <p style="font-size: small;">*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17년) :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2,000\text{만원})-\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text{연}4\%) \div 12\text{개월}\} + P^{***}$ $= \{0.7 \times (\text{근로소득}-60\text{만원})\}^* + \text{기타소득}^{**}$ <p style="font-size: small;">*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p> |
| 금액 변경 (4p) | <p>가. 기준연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월 ~ '16.3월 : 월 20만 2,600원 ● '16.4월 ~ '17.3월 : '16.3월 별도 통보예정 | <p>가. 기준연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월 ~ '17.3월 : 월 20만 4,010원 ● '17.4월 ~ '18.3월 : '17.3월 별도 통보예정 |
| 금액 변경 (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16.1월~3월 20만2,600원; '16.4월~'17.3월 별도 통보 예정 ** 부가연금액 : '16.1월~3월 10만1,300원; '16.4월~'17.3월 별도 통보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17.1월~3월 20만4,010원; '17.4월~'18.3월 별도 통보 예정 ** 부가연금액 : '17.1월~3월 10만2,005원; '17.4월~'18.3월 별도 통보 예정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출 서류 (22p) | 2. 추가 제출서류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기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 2. 추가 제출서류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u>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u> ● 기타 : <u>사용대차확인서</u>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 제출 서류 (25p) |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부채 등의 경우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자가, 전월세, 무료임차 여부) 등 확인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 -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징구 (서식 21호) · 자녀 또는 제3자가 임차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중략) |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소득·재산의 경우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자가, 전월세, 무료임차 여부) 등 확인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 - 무료임차인 경우 「 <u>사용대차확인서</u> 」 징구 (서식 21호) · 자녀 또는 제3자가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중략) |
| 제출 서류 (30p) | ● 기초연금 수급권이 제외 또는 상실한 다음 날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 날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 제출 서류 (31p) | (4) 안내사항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 (신설) | (4) 안내사항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 <u>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하여야 함</u> |

2) 수급자 선정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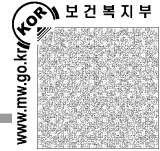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 | |
|-------------------------|---|---|------|------|-------|------------|------------|---|-----|------|------|-------|------------|------------|
| 금액 변경 (3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액 (2016년 기준) (단위 : 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단독가구</th> <th>부부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선정기준액</td> <td>1,000,000원</td> <td>1,600,000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000,000원 | 1,6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액 (2017년 기준) (단위 : 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단독가구</th> <th>부부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선정기준액</td> <td>1,190,000원</td> <td>1,904,000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190,000원 | 1,904,000원 |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 | | | | | | | | |
| 선정기준액 | 1,000,000원 | 1,600,000원 | | | | | | | | | | | | |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 | | | | | | | | |
| 선정기준액 | 1,190,000원 | 1,904,000원 | | | | | | | | | | | | |
| 직역 연금 (39p) | 39p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참조 | | | | | | | | | | | | | |
| 자구 수정 (47p) | 주의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 주의 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시 신청 하였으나, 각자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신청 상담 (47p) |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65세, 남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65세, 부인) 4) (신설) |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65세, 남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65세, 부인) 4) 홍길동은 기존 수급자이며, 배우자 홍길순이 연령도래하여 A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A시에서 B시로 신청서 이송, B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결정 • B시에서 A시로 변동알림으로 통보 | | | | | | | | | | | | |
| 사실 (이)혼 (49p) | 참고 사실상 혼인 및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혼 -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 ※ (신설) | 참고 사실상 혼인 및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혼 -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 ※ 법률상 이혼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동의)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로 처리 불가능. | | | | | | | | | | | | |
| 소득 조사 (51p) |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 | | | | | | | | | |
| 소득 조사 방법 (5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중략)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중략)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 | | | | | | | | | | | |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p>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p> |
| <p>근로소득 산정 (53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56만원)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 공제 $\text{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금액} - 56\text{만원}) \times \text{적용률}(0.7)$ <p>* 당해연도 최저임금(6,030원) × 23일 × 4시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60만원)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 공제 $\text{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금액} - 60\text{만원}) \times \text{적용률}(0.7)$ <p>* 당해연도 최저임금(6,470원) × 23일 × 4시간</p> |
| <p>근로소득 산정 (54p)</p> | <p>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가구 :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산정금액 : 65.8만원 *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56만원)] × 0.7 = 65.8만원 맞벌이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산정금액 : 75.6만원 * 본인 = [근로소득(100만원) - 기본공제(56만원)] × 0.7 = 30.8만원 * 배우자 = [근로소득(120만원) - 기본공제(56만원)] × 0.7 = 44.8만원 | <p>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가구 :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산정금액 : 63만원 *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60만원)] × 0.7 = 63만원 맞벌이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산정금액 : 70만원 * 본인 = [근로소득(100만원) - 기본공제(60만원)] × 0.7 = 28만원 * 배우자 = [근로소득(120만원) - 기본공제(60만원)] × 0.7 = 42만원 |
| <p>기타 사업소득 (55p)</p> | <p>② 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 <p>② 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이자 소득 (55p) | (1) 이자소득 ① 정의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1) 이자소득 ① 정의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 공적 이전 소득 (5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 공적 이전 소득 (57p) | <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5.4월~ '16.3월 : 282,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16. 4월~'17. 3월 : '16. 3월 별도 통보 예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282,6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화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p> </div> | <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6.4월~ '17.3월 : 284,0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17. 4월~'18. 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284,01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화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p> </div> |
| 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60p) | <p>(1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p> <p>(18) 「문화재보호법」 및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p> <p>(1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p> | <p>(1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p> <p>(18)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p> <p>(1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 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p> |
| 일반 재산 (72p) | <p>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p.143 참조)</p> | <p>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p.143 참조)</p>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신설)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 금융 재산 (7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 시 * 「금융실명거래법」 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여 산정 제외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산정 제외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산정 제외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 금융 재산 (7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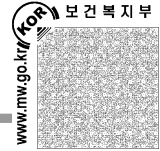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 (신설)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 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u>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u>.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 <u>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u>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u>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증여) 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u> * 기타(증여)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 | | | | | | | | | | | | | | | | | |
| 자연적 소비 금액 (82p) | <p>예시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A씨가 '15.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16.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2개월('15. 11월~12월) × 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1,631,625원) - 8개월('16. 1월~ 8월)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789,509원) | <p>예시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A씨가 '15.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17.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2개월('15. 11월~12월) × 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1,631,625원) - 12개월('16. 1월~ 12월)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789,509원) - 8개월('17. 1월~ 8월)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20,457원) | | | | | | | | | | | | | | | | | | |
| 자연적 소비 금액 (82p) | <p>21) 자연적 소비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원/월)</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td> <td>3,579,019원</td> <td>4,391,434원</td> </tr> <tr> <td>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td> <td>1,789,509원</td> <td>2,195,717원</td> </tr> </tbody> </table> | 구분(원/월) | 3인가구 | 4인가구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 3,579,019원 | 4,391,434원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 1,789,509원 | 2,195,717원 | <p>21) 자연적 소비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원/월)</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td> <td>3,640,915원</td> <td>4,467,380원</td> </tr> <tr> <td>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td> <td>1,820,457원</td> <td>2,233,690원</td> </tr> </tbody> </table> | 구분(원/월) | 3인가구 | 4인가구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 3,640,915원 | 4,467,380원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 1,820,457원 | 2,233,690원 |
| 구분(원/월) | 3인가구 | 4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 3,579,019원 | 4,391,434원 | | | | | | | | | | | | | | | | | | |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 1,789,509원 | 2,195,717원 | | | | | | | | | | | | | | | | | | |
| 구분(원/월) | 3인가구 | 4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 3,640,915원 | 4,467,380원 | | | | | | | | | | | | | | | | | | |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 1,820,457원 | 2,233,690원 | | | | | | | | | | | | | | | | | | |



3) 지급결정 및 연금의 지급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목 변경 (94p) | 나. A급여액 적용 산식 대상 | 나.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대상 |
| 기초 연금액 산정 (95p)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 (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
| 편제 재편 (95p) | 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직역연금의 범위는 p.86 참고)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다.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법 부칙 제5조)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 기초 연금 급여액 생성 (95p) | (4)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 (4)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개인별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
| 2017년 산식 (96p) | 나. 2016년 산식 ● '16.1월 ~ 3월 : 기초연금액 = (20만 2,600원 - 2/3 × A급여액) + 10만 1,300원 ● '16.4월 ~ '17.3월 : '16. 3월 별도 통보 예정 | 나. 2017년 산식 ● '17.1월 ~ 3월 : 기초연금액 = (20만 4,010원 - 2/3 × A급여액) + 10만 2,005원 ● '17.4월 ~ '18.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
| 기준 연금액 (96p) | 2. 기준연금액 (법 제5조 제2항) 다. 기준연금액 ● '16.1월 ~ 3월 : 20만 2,600원 ● '16.4월 ~ '17.3월 : '16. 3월 별도 통보 예정 | 2. 기준연금액 (법 제5조 제2항) 다. 기준연금액 ● '17.1월 ~ 3월 : 20만 4,010원 ● '17.4월 ~ '18.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
| 부가 연금액 (97p) | 3. 부가연금액 다. 부가연금액 ● '16.1월 ~ 3월 : 10만 1,300원 ● '16.4월 ~ '17.3월 : '16. 3월 별도 통보 예정 | 3. 부가연금액 다. 부가연금액 ● '17.1월 ~ 3월 : 10만 2,005원 ● '17.4월 ~ '18.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목 변경 (98p) |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 1.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
| 제목 변경 (99p) | 2.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대상 (법 제5조~제7조) |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에 따른 산정 대상(법 제5조~제7조) |
| 기초 연금 급여액 산정 (104p) | 예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2,6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3만원인 경우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2,600원 ② 소득인정액 83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 예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4,01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2만원인 경우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4,010원 ② 소득인정액 102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
| 제목 변경 (107p) | V. 소득재분배급여금액(법 제5조)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의 계산(법 제6조) | 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 A급여액 (107p) | 28)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에 비례하여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산정. 이는 경제활동시의 소득 차이를 연금 지급시 완화하는 장치로서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후세대로부터 이전 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28) A급여액 :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값에 의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는 값(이하 'A값')에 의해 산정 |
| 기초 연금액 산정 개요 (108p) | (내용추가) |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200%이하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 ①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 ②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 ①에 따라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p>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연계퇴직 연금액의 } 1/2) \} + \text{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p> <p>②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p> |
| <p>편제 재편 (108p)</p> | <p>2.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p> | <p>3.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p> |
| <p>편제 재편 (110p)</p> | <p>3.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p> | <p>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p> |
| <p>편제 재편 (111P)</p> | <p>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 기준</p> <p>가.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적용 받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여액) 연기 중인 기간에 대해 연기 직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노령연금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비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계산방법과 동일 •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여액)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등)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적용 | <p>5.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 기준</p> <p>가.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적용 받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연기)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여액) 연기 중인 기간에 대해 연기 직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노령연금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비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계산방법과 동일 • (연금개시)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여액)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등)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적용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목 변경 (113p) | <p>라. 연금의 소급지급 또는 환수금 총당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p>마.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가입기간 변동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재계산하며, 이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통보(확인)된 달부터 적용</p> | <p>라. 연금의 소급지급 또는 환수금 총당의 경우</p> <p>마.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가입기간이 변동하는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재계산하며, 이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통보(확인)된 달부터 적용</p> |
| 제목 변경 (113p) | <p>바. 분할연금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조기·재직자·연기·특례)에 관계없이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p> <p>사. 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p>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 <p>바. 분할연금수급권자의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조기·재직자·연기·특례)에 관계없이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p> <p>바-1. 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p>바-2.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
| 제목 변경 (114p) | <p>자. 기타 계산기준</p> | <p>사. 「국민연금법」 제35조에 따른 연금액 상한 적용자 및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p> |
| 편제 재편 (115P) | <p>5.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 <p>6.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p> |



4) 수급자 관리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 | |
|-----------------------------------|---|---|---|-------|------|---------|---------|------|--------------------|---------|--|---------------------|---------|--|
| 미지급 기초 연금 청구권자 (13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권자 순위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 | | | | | | | | | | | |
| 수급자 사후 관리 (153p) | - 예금, 증권(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 상품 (주택·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 - 예금, 증권(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 상품 (주택·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환매,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 | | | | | | | | | | | |
| 수급권 상실 처리 절차 (159p) | (3)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 | | | | | | | | | | | | |
| | 구분 | 적용 시점 | 처리절차 | | | | | | | | | | | |
| | 단독노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생략) | | | | | | | | | | | |
| |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 (생략) → <u>부부1인의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생략) | | | | | | | | | | | |
|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 배우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변경신고 → (생략) → (생략) → <u>부부1인의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생략) | | | | | | | | | | | | |
| | | (3)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시점</th> <th>처리절차</th> </tr> </thead> <tbody> <tr> <td>단독노인 사망</td> <td>수급자 사망일</td> <td>(생략)</td> </tr> <tr> <td>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td> <td>수급자 사망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 (생략) → <u>단독가구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생략) </td> </tr> <tr> <td>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td> <td>배우자 사망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변경신고 → (생략) → (생략) → <u>단독가구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td> </tr> </tbody> </table> | 구분 | 적용 시점 | 처리절차 | 단독노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생략) |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 (생략) → <u>단독가구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생략) |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 배우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변경신고 → (생략) → (생략) → <u>단독가구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 구분 | 적용 시점 | 처리절차 | | | | | | | | | | | | |
| 단독노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생략) | | | | | | | | | | | | |
|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 (생략) → <u>단독가구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생략) | | | | | | | | | | | | |
|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 배우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변경신고 → (생략) → (생략) → <u>단독가구 수급권</u>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 | | | | | | | | | |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
|-----------------------------------|--|---|----------------------|------|------|-----|-----|----------|-----------|-----------------|----------------------|----|
| 지급 정지 (16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고 또는...(생략) ● <u>(신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고 또는...(생략) ● 「행복e음」급여 미생성 알림을 통해 해외체류 의심자가 확인된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2017.4월부터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 해외체류 의심자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업무 처리 주체</td> <td>행복e음</td> <td>행복e음</td> <td>담당자</td> <td>담당자</td> </tr> <tr> <td>처리 업무</td> <td>급여 미생성</td> <td>급여 미생성 알림</td> <td>급여 정지 여부 결정</td> <td>통지</td> </tr> </table> </div> | 업무 처리 주체 | 행복e음 | 행복e음 | 담당자 | 담당자 | 처리 업무 | 급여 미생성 | 급여 미생성 알림 | 급여 정지 여부 결정 | 통지 |
| 업무 처리 주체 | 행복e음 | 행복e음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 처리 업무 | 급여 미생성 | 급여 미생성 알림 | 급여 정지 여부 결정 | 통지 | | | | | | | | |
| 지급 정지 (164p) | <p>③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고 또는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 확인 ● 주민등록말소(법원의 실종신고,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신고)는 「행복e음」의 변동 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없이 처리 가능 | <p>③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신고 또는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 확인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은 「행복e음」의 변동 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기관에 별도 확인없이 처리 가능 | | | | | | | | | | |
| 거주 불명 등록자 (165 ~166p) | <p>(2) 지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 확인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중략) - (실제 거주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중략) ● (지급정지 기간) 행정상 관리주소지...(중략) ● (지급기준) 추후 수급자의 소재...(중략) <p>(3) (수정 재배치)</p> | <p>(2) 지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 확인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중략) - (실제 거주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중략) ● (지급기준) 추후 수급자의 소재...(중략) <p>(3) 지급정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 관리주소지...(중략) | | | | | | | | | |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 | | | | | | | |
|---------------------------|--|---|--------|--------|---------------|------|------|--|-----|--------|--------|--------|---------------|------|------|------|
| 지급 정지 (167p) | (5)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중략)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e음」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 (5)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중략)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e음」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u>소득·재산 변경사항 확인 후</u>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 | | | | | | | | | | | | | |
| 환수금 징수 코드 (170p) | (신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참고 환수징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비용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의 금액 환수→이자가산 대상 반환명령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정지, 중지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대상의 환수금액 </div> | | | | | | | | | | | | | | |
| 환수금 이자 가산 (17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2015년도</th> <th>2016년도</th> </tr> </thead> <tbody> <tr> <td>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td> <td>2.0%</td> <td>1.4%</td> </tr> </tbody> </table> | 구 분 | 2015년도 | 2016년도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0% |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2015년도</th> <th>2016년도</th> <th>2017년도</th> </tr> </thead> <tbody> <tr> <td>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td> <td>2.0%</td> <td>1.4%</td> <td>1.1%</td> </tr> </tbody> </table> | 구 분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0% | 1.4% | 1.1% |
| 구 분 | 2015년도 | 2016년도 | | | | | | | | | | | | | | |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0% | 1.4% | | | | | | | | | | | | | | |
| 구 분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 | | | | | | | | | | | |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0% | 1.4% | 1.1% | | | | | | | | | | | | | |
| 환수금 분할 납부 (17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 납부 허용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 납부 허용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환수금 상계 (173p) | (2) 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 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부부 2인 수급 가구 중 한명만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동의하에 배우자의 연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 (2) 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 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삭제) | | | | | | | | | | | | | | |
| 환수금 징수 절차 (174p) | (2) 납부독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압류, 경매 등) 진행 | (2) 납부독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압류, 경매 등) 진행 | | | | | | | | | | | | | | |

|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
| 과태료 부과 (179p) | ③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③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1편 기초연금 개요

- I. 기초연금제도 개요
- II. 기초연금 업무흐름도





I. 기초연금제도 개요

1. 목 적(법 제1조)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대상자(법 제3조)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17년) :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 \{[(\text{일반재산}-\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2,000\text{만원})-\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
 &\quad (\text{연 } 4\%) \div 12\text{개월}\} + P^{***} \\
 &= \{0.7 \times (\text{근로소득}-60\text{만원})\}^* + \text{기타소득}^{**}
 \end{aligned}$$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지역연금 요건) (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5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i)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 ii)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 i)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ii)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특례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3. 기초연금액 (법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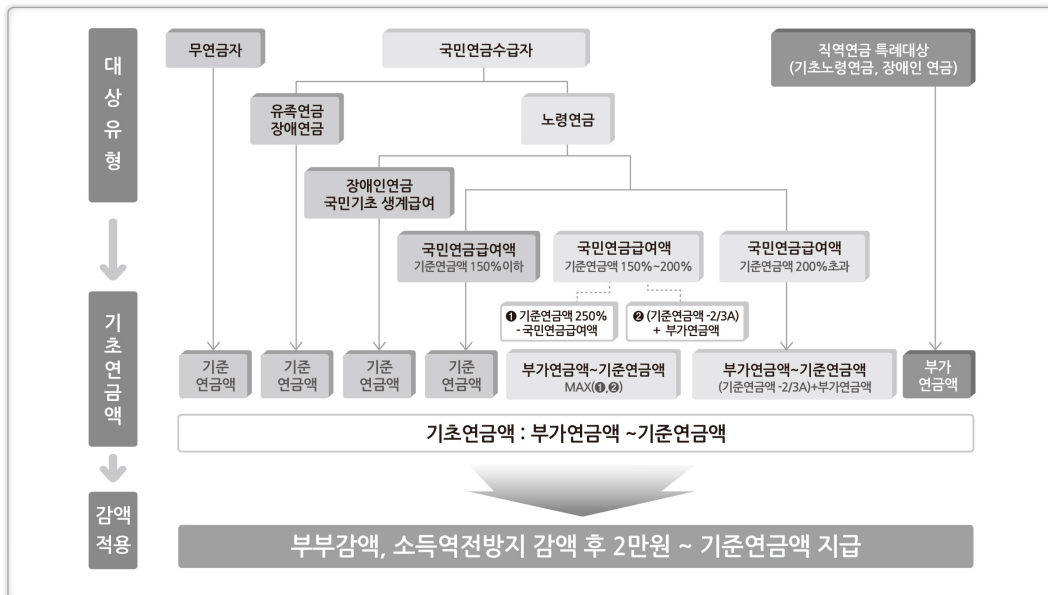
가. 기준연금액

- '17.1월 ~ '17.3월 : 월 20만 4,010원
- '17.4월 ~ '18.3월 : '17.3월 별도 통보예정

나.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절차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 대상유형별 기초연금액 산정

| 구 분 | 기준연금액 산정대상 |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대상 | 기준연금액의 50% 산정대상 |
|----------------|--|--|--|
| 대상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연금 수급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 |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부가연금액 |
| 기초연금급여액 (감액 후) | 2만원 ~ 기준연금액 | | 2만원 ~ 부가연금액 |



참고 | A급여액 적용 산식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17.1월~3월 20만4,010원; '17.4월~'18.3월 별도 통보 예정

** 부가연금액 : '17.1월~3월 10만2,005원; '17.4월~'18.3월 별도 통보 예정

※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액)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가능

-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2) 기초연금액의 감액 (법 제8조)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3)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방법

① Min(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

② 기초연금 급여액 표 (시행령 제11조)

(1)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 소득인정액('17년) | 101만원 미만 | 101만원 이상~ 103만원 미만 | 103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105만원 이상~ 107만원 미만 | 107만원 이상~ 109만원 미만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204,01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17년) | 109만원 이상~ 111만원 미만 | 111만원 이상~ 113만원 미만 | 113만원 이상~ 115만원 미만 | 115만원 이상~ 117만원 미만 | 117만원 이상~ 119만원 이하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2)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 소득인정액('17년) | 172.4만원 미만 | 172.4만원 이상~ 174.4만원 미만 | 174.4만원 이상~ 176.4만원 미만 | 176.4만원 이상~ 178.4만원 미만 | 178.4만원 이상~ 180.4만원 미만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204,01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17년) | 180.4만원 이상~ 182.4만원 미만 | 182.4만원 이상~ 184.4만원 미만 | 184.4만원 이상~ 186.4만원 미만 | 186.4만원 이상~ 188.4만원 미만 | 188.4만원 이상~ 190.4만원 이하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3)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6,400원)

| 소득인정액('17년) | 162.4만원 미만 | 162.4만원 이상~ 166.4만원 미만 | 166.4만원 이상~ 170.4만원 미만 | 170.4만원 이상~ 174.4만원 미만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 326,400원 | 28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 소득인정액('17년) | 174.4만원 이상~ 178.4만원 미만 | 178.4만원 이상~ 182.4만원 미만 | 182.4만원 이상~ 186.4만원 미만 | 186.4만원 이상~ 190.4만원 이하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 16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참고 | 기초연금 급여액 표의 이해

1 원칙

-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부부 2인 수급 가구 4만원) 단위로 감액

2 결정방법

- Min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

3 적용례

- ①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구간별 금액 = 기초연금 급여액
* 구간별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금액
- ②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구간별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구간별 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해도 선정기준액을 초과(2만원 단위)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구간별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 기초연금액은 항상 부가연금액보다 크므로, 구간별 금액이 부가연금액 이하인 구간은 항상 구간별 금액이 더 작음

(4)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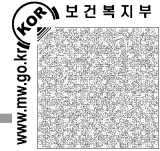
- ①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②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4. 타 제도와의 관계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

5. 재 원

-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 90% 범위에서 차등 지원



참고 | 공적연금 급여 유형 및 기초연금 급여관련 용어정리

1. 연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급여 유형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및 일시금 등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 연계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 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2. 기초연금액 관련 용어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으로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반영(차감)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A급여액, 부가연금액에 의하여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보다 크거나 같고 기준연금액보다 작거나 같다)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
 - ※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실 지급액** : 기초연금 급여액에 전월 소급지급분 가산, 환수금액 감액 등을 적용하여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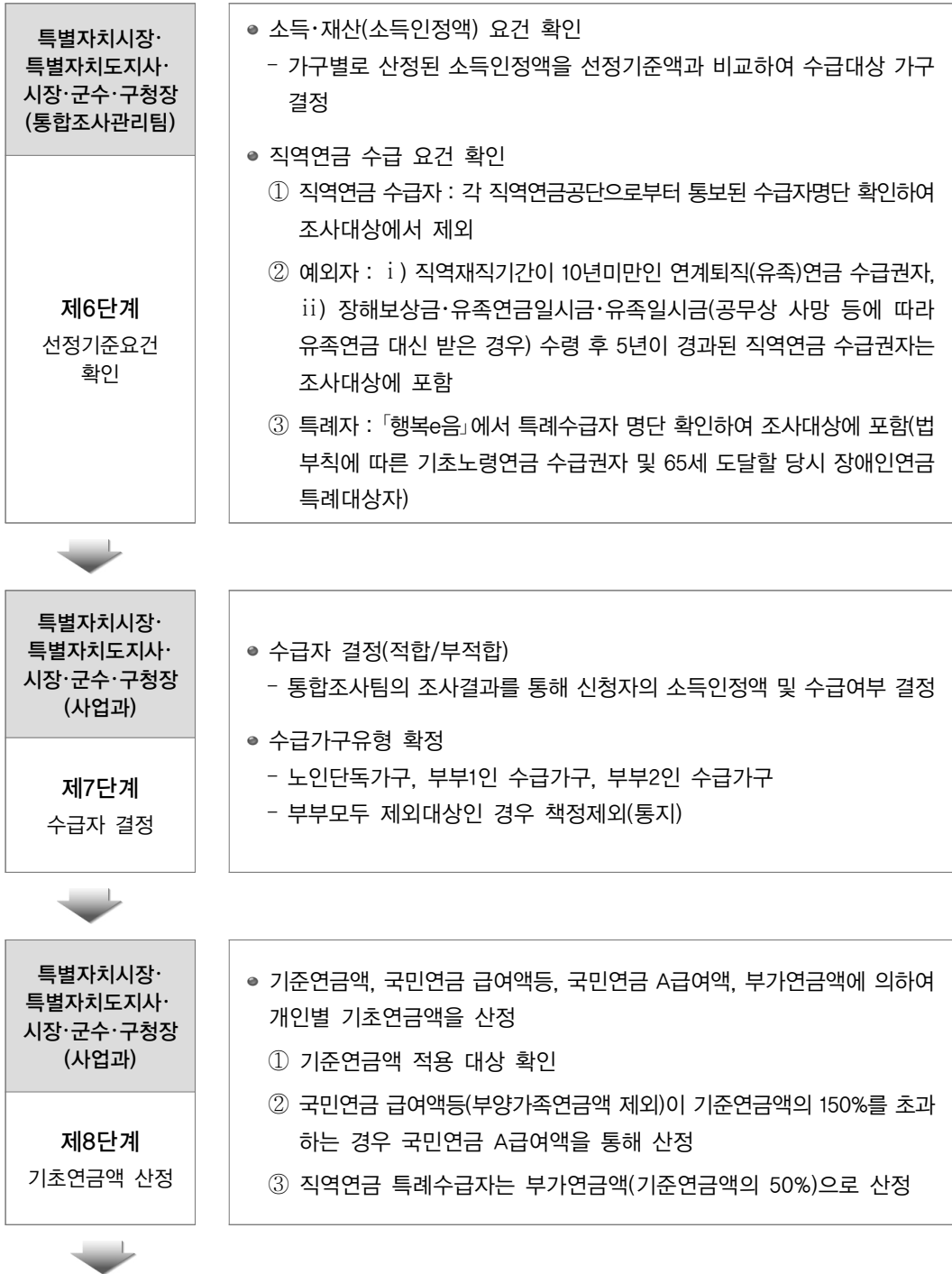
3.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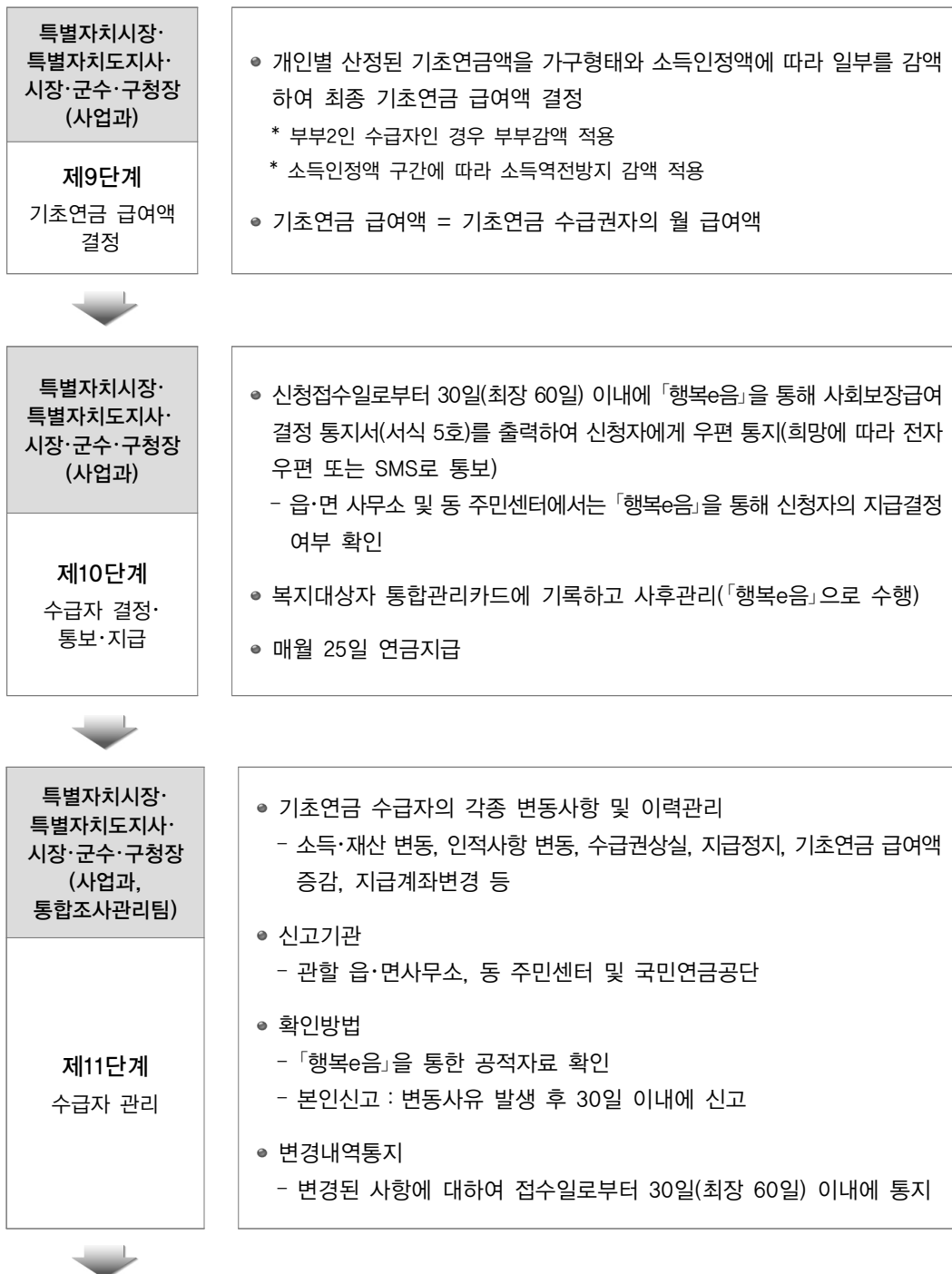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에 비례하여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산정되는 금액

4.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수급여부를 판단하여 환수범위 해당여부 검토 후 절차 이행 ● 환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대상 확인 → 납부고지 → 납부독촉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부과 통지 → 압류 (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
| 제12단계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 부적정 수급관리 | |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 4, 5, 6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 |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 4, 5, 6단계) ● 기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통지 |
| 이의신청 | |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2편 신청

- I. 신청권자
-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III. 신청 구비 서류
- IV. 신청서 작성·상담
- V.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 VI. 접수



I. 신청권자 (법 제10조)

1. 수급희망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가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 기초연금, 타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 신청 접수 가능
(☞ 사실(이)혼 확인방법 p.49 참조)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¹⁾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 10호)」 지참
- 관계공무원
 -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
 -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 본인으로부터 구비서류(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는 모두 징구

1) 사회복지시설장 : 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원칙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③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국적요건의 적용

● 복수국적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

●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

- (요건)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²⁾에 있는 ㉢ 만 65세 이상의 자로 ㉣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처리(해당가구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 변경)
단, '귀화허가신청접수증'을 제출하여 기초연금을 재신청한 경우 귀화허가통지 전까지는 부부2인 수급가구로 처리

●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의료급여사업 안내 참조)
-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사후관리

● '15.1.22 이전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65세 이상의 자

●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참조(☞ p.163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및 동거 확인 후 상담내역에 기록 관리

신청(수급)자격이 없는 자

●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560호)
 -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에 유의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 〉

- 국적상실자³⁾
 -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⁴⁾

〈 주민등록 요건 〉

- 주민등록말소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생성·재등록된 경우는 신청가능
 - 실종선고자⁵⁾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3) 국적상실 :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4)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5)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법 제10조 제1항)

(1) 방문신청

- (지자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공단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관련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등기우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결과를 결정하여 통지함을 안내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자)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 명의의 계좌만 인정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범위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 방법

〈본인 신청 또는 배우자 동시 신청 시〉

- (본인) 공인인증서
- (배우자) 공인인증서(단, 주소지가 같을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스캔 등록 가능)

〈자녀가 대리신청 시〉

-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부·모의 기초연금을 신청
- 부모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스캔 등록 가능

2.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Ⅲ. 신청 구비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 10호),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참고 |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①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
- ②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 ③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서식 1호)
 -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출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는 서식1호의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제출
 - 다만, 공단을 통한 신청 시 예금조회 후 출력화면을 제출한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 ※ 온라인 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 본인계좌 통장만 가능

2.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타 :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부채 사항 일괄 확인
 -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주의 대리 신청·접수 업무처리 방법

-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징구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필요시 관계공무원은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토록 요청
- 수급희망자 본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 기초연금 신청 관련 위임 여부 확인
 - * 대리인 신청시에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원칙으로 함
 - 수급희망자 본인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필요시 출입국 자료 확인)
- 수급희망자 본인의 위임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 다만,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징구를 통해 확인
- **안내사항**
 - 「기초연금법」 제29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 ※ 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노인 본인 모르게 자녀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리 신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IV. 신청서 작성·상담

1.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1)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1호)」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이력관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제출(서식11호)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항목 작성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소득·재산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p.24 참조)

(2) 신청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에 스캔하여 등록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 4호)」를 제출받아 「행복e음」에 통보요구서 제출여부 입력
 -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주의 신청 등록 시 확인사항

○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

- 타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상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처리
- ※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구분 없이 신규신청으로 처리

○ 사실(이)혼 관계 확인(☞ p.49 참조)

- 사실(이)혼 관계 확인은 수급자 결정(선정기준액, 연금액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서 작성 시 '※ 배우자 관계(☐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란'에 반드시 체크
- 「행복e음」상 가구원 등록시 사후관리를 위해 사실이혼 배우자를 포함하되,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가구구성원 변경 - 소득산정가구」, 「보장별 가구구성」에서 체크 해제)

○ 대리신청시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위임여부, 해외체류여부 등 반드시 확인

참고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요령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장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수
 - 부득이한 경우 부부 각각 1장씩 작성·제출하는 것도 가능
 - * 인감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을 말하며,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한글정자) 서명이나 무인(지장)을 찍도록 함
 - 1) 신규신청자의 경우 :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
 - 2) 기존수급자의 경우 : 수급책정 이후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
 - 3) 복지대상자가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신청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희망 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2. 신청 상담

(1) 신청자격 상담

- (신청자의 연령) 신분증을 통해 만 65세 이상 확인
- (가구구성)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여건 등을 확인하여 가구범위 판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를 조회하여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사실(이)혼의 경우 「사실(이)혼 관계확인서(서식20호)」 징구(☞ p.49 참조)
- (지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및 안내)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주의 지역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훈급여금 대상자는 지역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보훈급여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됨

(2) 소득·재산 사항 상담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소득·재산의 경우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자가, 전월세, 무료임차 여부) 등 확인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
 -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징구(서식 21호)
 - 자녀 또는 제3자가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자녀 또는 제3자)가 무료임대 확인
 - 노숙자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복명서」로 갈음하여 처리

- 자녀소유주택에 무료 임차로 거주 중인 경우 조사과정에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3) 예상연금액 문의에 대한 상담

-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복e음(지자체)」 및 「복지로(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
 - 소득·재산항목은 수기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됨
 - 다만, 국민연금수급자의 A급여액 등은 실시간 조회 가능
 -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

참고 |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 인터넷상 확인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4) 연금 지급 계좌 신청

- (원칙)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신청
 - 다만,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신청가능
- (예외)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인정되는 사유
 -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
 -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단, 금융기관, 우편관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접 지급

- 대리수령 가능한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신청시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신청서(서식 12호)
 - 수급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 예외적인 경우의 확인서류(☞ 확인방법 p.28 참고)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의 신분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연금의 사용목적 및 타 용도 사용금지 등 안내

안내 내용(예시)

“기초연금 신청자는 ○○○ 어르신이나, 당사자의 희망에 의하여 ○○○ 어르신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본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 제3자 명의 계좌 신청시 확인방법

-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건 이상을 제출받음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제3자 명의 계좌 적용
- ③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5) 신청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동의사항 확인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통지방범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메일), 전화안내 등으로 통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수급(권)자가 통지방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신고의 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인적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입소,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행방불명, 실종 등
 - 소득·재산의 변동 : 취업, 실업 등 근로상태 변동,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등 사업형태 변동, 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혼인·사망 등에 의한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
 -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 및 처벌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기초연금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고지사항 안내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를, 비상장 주식 보유자는 보유 및 처분 등의 여부를 성실히 신고토록 안내

- 복수국적자는 국외체류 60일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국내의 출입국시 출입국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여권을 사용하도록 안내
- 주택·농지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수급권 발생여부를 성실히 신고토록 안내
 - ※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변경·상실될 수 있음을 안내
-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V.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행령 제13조의 2)

1.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1) 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2) 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기간

-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4) 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2. 이력관리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모두 이력관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 불가
 -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2) 이력관리 주체

-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4)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하여야함.
-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행복e음」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를 유지(적용)

(2) 소득 및 재산 등 적용기준

-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3) 조사시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조사범위

- 수급자와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5) 조사방법

- 「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를 유지

(6)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 대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
- 처리방법
 - 기초연금 수급 가능자로 예측 결정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
-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확정된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 안내
- 안내방법
 -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음

(7) 이력관리 중지

- 대상
 -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 중지일자 : 중지 사유 발생일

VI. 접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접수
 -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출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는 서식1호의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신청인(대리인 포함)에게 각 항목을 필히 확인 받은 후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완료된 것을 제출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원본서류는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참고 | 국민연금공단 신청 접수 방법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복지로(국민연금공단)」)

- 확인사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는 반드시 조회되는 주민등록정보 또는 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인
 - * 「복지로(국민연금공단)」 공단 직원용 등록화면에서 주민등록정보 확인 가능
 - *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수급희망자에게 신청의사를 유선으로 확인
- 신청등록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필요시 특이한 상담내역 및 타 복지급여 신청 여부 등을 간략히 입력
 - * 타 복지급여 동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으로 상담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및 금융정보 등 조회사실 통보여부 등 확인, 필요시 소득·재산·전월세·부채정보 및 추가서류 등 입력
 - * 신청 첨부서류(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임장 등)를 스캔하여 등록
 - 입력 정보 확인 후 최종 신청등록
 - * 단독가구 또는 부부 1인 가구, 주소지가 동일한 부부 2인 가구는 자동적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전송'
 - * 단, 주소지가 다른 부부 2인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중 선택하여 전송
 - 신청등록 후 진행상태(접수대기, 접수, 심사 중 등) 및 신청결과(적합여부 등) 확인
 - 읍·면·동에서 보완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보완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 수정 후 재전송

● 주의사항

- 주민등록 가족정보 조회 등 일부 신청서 작성 후 최종신청 전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
* 신청정보 조회 후 입력화면을 강제로 종료 시 개인정보조회 소명 등 예정
- 신규신청 이외 변경신고, 이의신청,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별도 공단시스템에 입력 후 원본서류는 즉시 지자체 등기 송부 (신규신청 이외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이용 불가)
- 가족관계 확인방법, 대리인의 신청 시 위임여부, 특이사항 등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상담내용'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말일에 신청하는 경우(사전신청자 제외)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반드시 당일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입력 후 전송 완료

〈 매월 말일 신청서류 처리방법(공단)〉

- *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복지로」상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불가 및 서류 보완이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함을 안내
- * (추가 제출서류 미비 시) 「복지로」상 입력이 가능하므로 당일 입력·등록완료 후 신청서류를 우선 관할 읍·면·동으로 FAX 전송 및 담당자와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차후 서류 보완 수행)

- 신청등록 후 지자체에서 최종 접수 전 구비서류 미비 시 직접 또는 공단에 일부서류 보완가능

●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행복e음」)

- 신청서류 확인 후 서류보완
 - 기초연금 신규신청으로 전송되었으나 「행복e음」에 통합조사표가 존재하는 경우, 변경신청으로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등록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신청자에게 보완요청
 - 우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서류보완요청'
 - * 신청단계에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스캔본 등 보완요청 가능하나, 접수이후는 보완요청 불가능
 - * '신청서 반려'시 신청일이 변경 되어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복지로(국민연금공단)」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 '보완요청'으로 통보
 -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구비서류 보완 가능
 -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을 취소하지 않도록 유의
- 타복지급여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접수처리 전에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타복지 급여 신청절차 진행(단, 타 복지 급여 서류 보완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변경신고, 이의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신청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 「행복e음」에 자동등록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행복e음」에 등록하여 처리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조사

- I. 수급자 선정 개요
- II. 조사의 개요
- III. 조사 가구 유형 확정
- IV. 소득조사
- V. 재산조사
- VI.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 VII. 수급가구 유형 확정



I. 수급자 선정 개요 (법 제3조)

1. 선정 기준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요건(소득·재산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60\text{만원})\}^* + \text{기타 소득}^{**}$
 - * 상시근로소득에서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div 12\text{월}\} + P^*$
 -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선정기준액 (2017년 기준)

(단위 : 월)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1,190,000원 | 1,904,000원 |

(3) 직역연금 요건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①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② (예외)
 - 직역채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③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i)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ii)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되는 경우, 65세 도달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주의 특례 적용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관리하며,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만 해당) | 해당 | |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만 해당) | 해당 | |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 | 장해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 | 연계퇴직연금 ^{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 |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보상금 | 해당 | |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만 해당) | 제외 | 재해부조금 | 해당 | |
| | 장해보상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주2)} (공무원연금만 해당)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 |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공무상요양비 (사학연금의 경우 직무상요양비) | | | | 해당 |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 | 연계퇴직연금 ^{주1)}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 |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 제외 | 장해보상금 | 해당 | |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 퇴직일시금 | | | 해당 | | |
| 재해부조금 | | | 해당 | |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 연계퇴직연금 ^{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 |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주2) 공무상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2. 수급자 선정 업무흐름도

| | |
|------------------------|--|
| <p>① 조사가구유형 확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연령 요건 확인 (만 65세 이상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 대상 추가 |
| <p>② 공적자료 요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 (직역연금 및 국민연금 정보 포함) |
| <p>③ 소득·재산조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 공적자료와 다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반영여부 결정 |
| <p>④ 소득인정액 요건 확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수급대상 가구 결정 |
| <p>⑤ 직역연금 수급 요건 확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역연금 제외자, 예외자, 특례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예외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수령 후 5년 경과자 특례자 : 제외자 중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특례자 |
| <p>⑥ 수급가구유형 확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모두 제외대상인 경우 책정제외(통지) |



II. 조사의 개요 (법 제11조 및 제12조)

1. 조사의 원칙

(1)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에게 확인(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2)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의뢰

- 조사 의뢰 전에 신청자·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 직접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증표 및 관련서류(서식 22호) 제시 (시행예정)
 -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희망)자와 필요시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및 확인요청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
 - ※ 공단의 현장조사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재조사 요청 가능
- 공단에 의뢰 가능한 현장조사 유형
 - 사실(이)혼 확인
 - 사망의심자의 사망 여부
 - 거주불명등록자 확인조사
 - 타인계좌입금수급자 등의 대리수령 필요성 및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 배우자의 부재(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 여부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신청 여부 등
 - 기타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법 제2조 제4호)

(1) 조사의 단위 : 가구단위*로 조사

*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2) 조사대상 : 신청자(또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포함
- 가출·행방불명·실종⁶⁾,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조사
 - 다만, 부재 배우자의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신청자(또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 외의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및 소득인정액에 포함 가능

(3)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공적자료·금융자료 등의 조회가 가능한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
 -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주의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 배우자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6)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구유형 확정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확인 →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부부가구로 가구유형 확정 → 부부 2인의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조회 요청
- 고유식별번호
 -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3.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해 실시
- (2) **조사대상** :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 (3)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국민연금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음
- (4) **조사시기** :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개시
- (5)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
 - 신청 후 조사기간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결정 전에 반영
- (6)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기초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나. 확인조사

-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2) **조사대상** : 변경신고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조사대상(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3)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
- (4) **조사의 구분**
 - ① 정기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갱신·반영
 - ② 수시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 ③ 변동신고에 의한 조사
 - 수급자가 소득·재산, 기초연금액, 인적 요건 변동 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확인조사의 범위〉

| | 구분 | 조사내용 | 세부내용 |
|-------------|----------|-----------------------------------|---|
| 소득 인정액 | 소득 | 소득액 증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월 급여액 변동, 취업·퇴사·이직 등 • 사업소득 : 사업소득액의 변동,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 재산소득 : 연금·이자소득의 발생 및 변동 등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등의 급여액 변동 |
| | 재산 | 재산액 증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증감(매입·매도, 증여 등), 재산가액 변동 |
| 수급자격 및 가구유형 | 인적 변동 | 가구 유형 변동 수급 정지 여부 수급권 상실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실종, 가출, 해외장기체류 등 •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등 |
| 기초 연금액 | 기초연금액 변동 | 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권·급여액 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국민연금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변동 등 • 직역연금 급여액 변동 |
| 급여 관리 | 관리행정동 | 주소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
| | 급여 지급 | 계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변경 |

(5)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 변동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6)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 수립

참고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i) 조사·질문의 기본방향
- ii)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 iii) 조사·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 iv)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v)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실시

참고 | 부서 간 역할 분담

- (시·군·구 사업팀) 조사범위 할당 등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조사 결과 취합·정리 및 보고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조사 실시, 조사결과 사업팀에 통보
-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업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
 - ※ 지자체는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극 협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요청한 현장조사 업무 수행
 - ☞ 제10편 부록 「Ⅲ.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참고

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

-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 (2) **조사대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3)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 (4) **조사결과처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p.30 참조)

4. 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거나,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
 - 「행복e음」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급여실시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참고 | 조사 및 자료 징구의 근거(「기초연금법」)

- ☐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제11조 제1항)
-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11조제4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법 제31조제1항)


주의 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시 신청 하였으나, 각자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 동일한 보장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보장기관이 다른 경우는 먼저 신청 접수된 보장기관이 보장결정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보장결정이 완료되면 변동알림 기능으로 배우자의 보장기관에 보장결정 사실이 제공되며, 각 보장기관에서는 급여생성 여부 확인
 -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보장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며 재책정시 배우자의 보장기관에 알림 기능으로 통보
 - ☞ 변동관리는 변경신청 받은 보장기관 담당자가 스캔 등록 후 부부 모두 보장결정

예시 |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65세, 남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65세, 부인)
1) 부부가 A시에 동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A시 담당자
 - 홍길동, 홍길순에 대해 신청접수
 - 홍길동, 홍길순에 대한 조사
 - 홍길동, 홍길순에 대한 보장결정(보장결정 내용을 B시는 변동알림으로 확인)
- B시 담당자
 - 변동알림을 통해 홍길순의 보장결정 내용 및 급여생성 여부 확인

2) 부부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동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홍길동 또는 홍길순의 보장기관 중 선택하여 신청내용을 전송, 처리방법은 상기와 동일
- 전송받은 보장기관에서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공단신청 처리 상태알림

3) 홍길동은 기존 수급자이며, 홍길순은 연령도래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한 경우

- B시에서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결정
- A시에 변동알림으로 통보, 공단신청 처리 상태알림

4) 홍길동은 기존 수급자이며, 배우자 홍길순이 연령도래하여 A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A시에서 B시로 신청서 이송, B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결정
- B시에서 A시로 변동알림으로 통보

Ⅲ. 조사 가구 유형 확정

1. 개요

- 신청자의 배우자를 확인하여 가구를 구성
 -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포함
 -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조사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가구 구성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 공적자료 요청

2. 조사가구 유형

- (1) 단독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 (2) 부부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



주의 「행복e음」 가구구성 시 유의사항

- 조사가구별로 통합조사표가 하나만 존재해야 정상적으로 급여 생성
(예시) 부부와 노부(모) 세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통합조사표 분리해야 정상적인 급여 생성 가능
(① 노부(모)의 '단독가구 통합조사표', ② 부부의 '부부가구 통합조사표')

3. 가구구성 및 조사방안

- (1) 부부가구로 조회되지만 단독가구로 적용되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이혼 상태에 동의하여야 하며,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등)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20호)」 징구
 -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조사복명서 존재 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같음

사실(이)혼 업무처리 절차

-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사실상(이)혼 상태에 동의하여야 하며,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등)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서식20호) 징구
-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나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① (읍·면·동) 서류제출 미비 시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 ②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서류보완 요구 : 수급(권)자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제출한 경우 조사 진행
 -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 조사 의뢰 전에 수급(권)자 상담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필요
 -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확인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확인요청 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
 -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배우자 동의 여부 및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같음하여 처리 가능
 - 현장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각하'처리
 - ③ (국민연금공단) ※필요시 요청 가능
 -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회신
 - 단, 조사의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14일 이내 회신 가능
 - ④ (사업과)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결정

참고 | 사실상 혼인 및 이혼

- 사실혼
 -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
 - ※ 법률상 이혼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동의)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로 처리 불가능.
- 사실이혼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 합의를 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관계
 - ※ 세대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 불인정

(2) 부부가구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 불가)



주의 배우자 부재 시 사후관리 방법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실(이)혼 등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
 - 사실(이)혼은 연 1회 이상 사실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징구
 -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은 연 1회 이상 증빙서류 제출토록 안내



IV. 소득조사 (법 제2조 제4호)

1.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2. 소득 산정기준

(1) 공적자료 반영기준

-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소득’을 반영

(2) 변동자 소명 시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상실 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폐업)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2)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 조회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i)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⁷⁾
 - ii)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iii)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 「행복e음」연계 후 적용(16.3월 중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7) 건강보험가입자 보수월액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된 평균 보수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행복e음」에 의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iv)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v)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다만,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ftc.or.kr>) -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3) 근로소득 산정방식

● 적용범위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된 상시근로소득

●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60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 공제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text{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금액} - 60\text{만원}^*) \times \text{적용률}(0.7)$$

* 당해연도 최저임금(6,470원) × 23일 × 4시간

예시 | 근로소득 공제방법

- 단독가구 :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산정금액 : 63만원
 - * $[\text{근로소득}(150\text{만원}) - \text{기본공제}(60\text{만원})] \times 0.7 = 63\text{만원}$
- 맞벌이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산정금액 : 70만원
 - * 본인 = $[\text{근로소득}(100\text{만원}) - \text{기본공제}(60\text{만원})] \times 0.7 = 28\text{만원}$
 - * 배우자 = $[\text{근로소득}(120\text{만원}) - \text{기본공제}(60\text{만원})] \times 0.7 = 42\text{만원}$



참고 |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행복e음」의 조회 결과를 반영,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됨
 -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한 후 소득에서 제외

주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행복e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부채 공제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나. 사업소득

(1) 임대소득

- ①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기타사업소득

- ①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②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공제 적용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다. 재산소득

(1) 이자소득

- ① 정의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②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등 결과 적용

참고 |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반영)

(2) 연금소득

- ①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라. 공적이전소득

(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지역연金の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⁸⁾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⁹⁾, 간호수당¹⁰⁾, 무공영예수당¹¹⁾
-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6.4월~'17.3월 : 284,0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17. 4월~'18. 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284,01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3)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전(前)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마. 무료임차소득

(1) 정의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8)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국가유공자 고령수당 포함
 9)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0)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11)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2)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

참고

- 2011. 6. 30일 이전 자녀에게 증여하여 3년 경과된 경우 → 무료임차소득 산정
- 2011. 7.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되, 무료임차소득은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다만,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소비금액 등을 차감하여 소진된 경우 → 무료임차소득 산정

- (적용기준)
 - (거주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
 - * 신청자(수급자)의 65세 미만 배우자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소유 기준)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산정방법)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 * 공동지분(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text{무료임차소득} = \text{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times \text{지분율} \times 0.0078 \div 12\text{월}$$

〈 무료임차소득 〉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3) 조사방법

- i)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 주소지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가능성을 알리는 ‘알람 또는 유사주소 검색’ 확인(「행복e음」시스템)
 - ※ 알람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무료임차소득 부과대상 주택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사주소 검색’ 기능 활용
- ii)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및 임차계약 여부 확인
- iii)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또는 전·월세 임차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무료임차)인 경우,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 확인
- iv)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자가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
- v) 해당 주택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무료임차소득 산정
 - ※ 시가표준액이 미조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예시 |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 ①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
→ 6억원 × 연 0.78% ÷ 12개월
- ②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5천원 산정
→ 6억원 × 연 0.78% ×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③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1/2)만큼 재산으로 산정
- ④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3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1/3)만큼 재산으로 산정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4)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7)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 (1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금
-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 (1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 (14)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15)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16) 흥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17)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 생활안정 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 성격
- (18)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 (1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 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2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 (21)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 (22)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V. 재산조사 (법 제2조 제4호)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산정방법)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div 12\text{개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팔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월 소득으로 산출한 후 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합산

-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 구 분 | 공제액(만원)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구, 도·농복합군 포함) | 13,500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 |
| 농어촌(도의 '군') | 7,250 |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적용

예시 홍길동은 광주광역시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 소유 및 거주, 부인 홍길순은 경북 B군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 소유 및 거주(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2,000\text{만원} - 13,500\text{만원}) \times 4\% \div 12\text{개월} = 283,333\text{원}$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

2.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
 - 단,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¹²⁾(「소득세법」 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2)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12)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름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 재산항목 | 산정기준 |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 입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어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 금융재산 |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 재산종류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토 지 | |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 표준지공시지가×면적 |
| |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 개별공시지가×면적 |
| 건 축 물 | 주 택 |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
| | | |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
| | 건 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시설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선박/항공기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입목재산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회 원 권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어 업 권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¹³⁾(「주택법」 제2조제1호)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② 조사방법

-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건축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13)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

- 주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문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
 - 해당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 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종중·문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¹⁴⁾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하여 가액 산정
 - 무허가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



주의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 미등기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
- * (예시) 상속재산이 1억원,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14)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 필요)



주의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산정 방법

-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 내 토지, 가족묘지 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 잠긴 전·답 등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복e음」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2) 항공기·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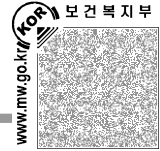
-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¹⁵⁾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3) 임차보증금

- ①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②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15) 보정계수 : 「지방세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3%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률}^{16)}(0.95)$$

③ 유의사항

-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변제(양도) 전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변제(양도) 후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16) 적용률 설정 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 반영



주의 임차보증금 산정 시 유의사항

-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재산으로 산정
- 신청자(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이주비지원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이외의 이주비지원 대출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전세계약서 제출 시 처리방법
 - 감소분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 입소보증금 처리방안
 - 입소보증금은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명의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소 시 반환되는 입소보증금을 노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재산 산정



주의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임대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산정 방법


- (임대보증금)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의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 (예시) A는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7천만원)를 주었을 경우
 - ⇒ A의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 (유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월 임대료는 임대인(A)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공공기관과 입주자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징구
 -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1,000만원)한 B가 입주한 경우
 - ⇒ B의 임차보증금은 950만원으로 산정(1,000만원×0.95)

(4) 조합원입주권

- ①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②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¹⁷⁾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주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사업 완공으로 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청약 당첨 물건지와 등기부등본 상 물건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자료는 삭제하고, 전환된 주택 재산 확인·반영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매매 또는 증여 관련 증빙자료 징구**

(5) 분양권

- ①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②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6) 입목재산

-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지방세법」 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17)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은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음

(7) 어업권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회원권

①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확인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
 - ※ (예외)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원권이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 적용

예시 | 회원권 재산 산정방법

- 대도시 거주하는 단독가구로 주택 2억원, 골프회원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216,666원
 $\{(주택\ 2억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times 연\ 4\% \div 12개월\} + 회원권\ 2천만원$
 $= 216,666원 + 2천만원 = 20,216,666원$

(9) 자동차

- ①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②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량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비율
 ※ 차량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③ 조회결과 적용
 -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전수 표기되었으므로 상담 시 자동차 유형 및 소유 여부를 확인(자동차등록원부,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징구)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1대인 경우 지분여부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 산정
-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및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제외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 및 자동차 가액을 전액 산정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개별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 * 개별차량 가액을 합산하여 4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주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

- ① 차령¹⁸⁾이 10년 이상인 차량
-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 받아 실제 차량을 공매차량 보관소에 인도 후 “차량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경우와 「국세징수법」제68조 공매통지에 의거 실제 “공매통지공문”을 송달 받은 경우 등
 - 다만,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p.143 참조)
 -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④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⑤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대표차임을 보장 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라 표기되어야 함
 - i) 정기검사 3회이상 미필, ii)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iii) 교통법칙금 50회이상 미납, iv)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표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18)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행복e음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99. 5. 1인 경우 '09.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산정 제외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참고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전상군경(제4호), 공상군경(제6호), 4.19혁명부상자(제12호), 공상공무원(제15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제17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적용방법) 해당가구에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 노인부부 각각 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예시 | 자동차 재산산정방법

〈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 ① 노인과 아들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②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③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차량

〈 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

- ① 자식과 공동 소유하는 일반차량 : 전액재산으로 산정
- ② 소유차량 2대 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 장애인 차량만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

〈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 ① 1대에 한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②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나. 금융재산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사대상자 : 신청자(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단,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을 통해 금융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¹⁹⁾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19)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입의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
 * 기타(증여)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 용 도 | 증빙서류 |
|-------------|---------------------------|
| 일시금의 출금 확인 | 일시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등 |



(6) 금융재산의 공제기준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7) 유의사항

-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²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노인 → 자녀)시 '기타(증여)재산' 항목으로 산정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연금개시 후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

20) 요구불예금은 평균잔액으로 산정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복 산정 문제 발생 가능

다. 기타(증여)재산

(1) 정의 :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

(2) 적용기준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 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증여일(또는 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타(증여)재산은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행복e음」에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

※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3)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 증여 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국가유공자, 장애인, 조례에 의해 비과세차량 등)를 증여한 (또는 처분한) 경우 :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주의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종중·문중의 금융재산

-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고유번호'로 계좌이체한 경우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 * 고유번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 [예외] 고유번호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종중·문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하여 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 ① 고유번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확인
 - ※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유번호증 발급 불가' 확인서류
예시)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 등 고유번호 불가사유가 명시된 확인서
 - ② 종중·문중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한 경우 지위인계 사실, 재산의 내역·운영 현황 등을 확인
 - ※ 확인서류 : 종중·문중 회원명부·정관, 총회 결의서 또는 대표자의 기명이 날인된 총회 회의록, 종중·문중 대표자 확인서, 종중·문중재산 결산내역(규모·내역·운영현황 등을 파악) 등
 - ③ '계좌거래내역서'를 확인하여 인계한 금액만큼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제 3 편

(4) 증여재산의 범위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 *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

(5) 조사방법

- ①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주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예외]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타재산증가분으로 차감가능
 - ① 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
 - ※ 확인서류 :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대위변제 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 등
 - ② 사망한 배우자 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 등을 통해 부채까지 상속승계 받은 경우
 - * 한정상속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함
 - 「행복e음」상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및 부채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부채는 삭제되고 재산만 수급자에게 산입된 경우 포함
 - 수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등기 완료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채도 상속받았다고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 ※ 확인서류 :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등

②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 단,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준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요양·재활 등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자
 - 적용기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준하여 적용
 -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 질환(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연장가능)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단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건강보험공단)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단,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 :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및 양육비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액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공증), 법원판결문, 계좌이체 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해당 재산 순위별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금융)에 포함하여 신청자(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주의 임대보증금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법

- ☐ 임대했던 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시가표준액 50%범위 내)을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처리
- * 처분한 주택, 상가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③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 자연적 소비금액²¹⁾(월 인정액)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 * 가구단위로 인정하고 있어 일반재산 처분(주택매각 등), 금융재산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중복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금융재산의 경우 최근 조사일자 '조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명하는 경우 '계좌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 이 속한 달부터 차감
- 노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 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 기준으로 적용

예시 |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 단독가구 A씨가 '15.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17.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2개월('15. 11월~12월) × 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1,631,625원)
 - 12개월('16. 1월~12월)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789,509원)
 - 8개월('17. 1월~8월)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20,457원)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 구분 | 3인가구(단독가구) | 4인가구(부부가구) |
|-------|------------|------------|
| 2014년 | 1,594,941원 | 1,956,984원 |
| 2015년 | 1,631,625원 | 2,001,994원 |
| 2016년 | 1,789,509원 | 2,195,717원 |
| 2017년 | 1,820,457원 | 2,233,690원 |

21) 자연적 소비금액

| 구분(원/월) | 3인가구 | 4인가구 |
|---------------------|------------|------------|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 3,640,915원 | 4,467,380원 |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 1,820,457원 | 2,233,690원 |

5.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3) 조사방법

-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²²⁾,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2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으로, 일명 ‘역모기지’라고 하며,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을 평생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보중에 의한 ‘중신지급과 중신거주’를 특징으로 함(2007년 7월 12일부터 판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예)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제 주택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이 연금을 신청한 경우
 ⇒ 신청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액 누계(60만원 × 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산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할부금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산정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²³⁾, 한국장학재단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등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판결문(결정포함),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 확인

예시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보험 대출금

-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 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 ②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 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
 -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서 발급

23) 신청 당시 지급받은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소득산정 없이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을 부채로 차감



③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공공기관과 임차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부채 인정
- * 전세권 설정 등기²⁴⁾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주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방법

- ⊙ 「행복e음」 등록 시 임대보증금을 시가표준액 50%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등록
- ⊙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 산정
 -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별도로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예시1)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의 50%)을 부채로 산정
 - (예시2)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7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7천만원을 부채로 산정

-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주의 다가구 주택의 부채 처리방법

-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
 -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
 - * 다가구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임
 - * 다세대주택 :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 채로 간주

24) 부채사항 상담·조사 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4)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임대보증금
 - 2007년 10월 15일 이후 '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5) 부채로 인정시 유의사항

-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 처리방법

-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부채 상환금으로 불인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 간 금전대차에 대한 변제를 강제·구속하고자 하는 사문서로 부채가 아니며,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Ⅵ.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1. 직역연금 수급권자별 대상 구분

(1) 원칙 : 기초연금 지급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예외 : 기초연금 지급(기준연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3) 특례 : 기초연금 지급(기준연금액의 50%)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 (요건)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되는 경우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 * (요건)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 ②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특례보호 대상은 '14. 7월 법 시행 당시 보호대상(수급자)으로 한정

- 특례보호 대상은 개인 단위로 관리(본인은 특례보호 대상이더라도 배우자가 특례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법 시행 당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특례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예시 | '14. 7월 법 시행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로서 夫는 65세 이상, 婦는 65세 미만인 경우

- 1) '14. 7월 당시 夫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婦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夫에게만 특례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
- 2) '14. 7월 당시 65세 미만인 婦가 추후 65세에 도달한 경우
→ 특례보호는 법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국한되므로, 婦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14. 7월 당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14.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으나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추후 특례수급자 직역연금 수급 등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됨

예시 | '14. 7월 당시 夫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나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5세이상)로서 특례 적용 대상임. 婦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중 새로운 직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특례 수급자로서 부부에게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씩 산정

2. 직역연금 조회결과 적용

- 「행복e음」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에 대해 각각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예외대상, 특례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 기초연금 신청시 상담이력과 「행복e음」 조회결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VII. 수급가구 유형 확정

1. 단독가구

- (1)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2) 부부가구로 조회되지만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부부 1인 수급가구

- (1)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2)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적용하는 경우
 - 직역연금 특례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p.87 참고)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 불가)
 - 부부 중 1인이 해외체류 60일 이상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배우자인 경우

3. 부부 2인 수급가구

- (1)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포함)
- (2)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p.87 참고)
- (3)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p.89 참고)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4편 기초연금액 결정

- I. 개요
- II.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 III. 기초연금액의 산정
- IV. 기초연금액의 감액
- 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I. 개요

1. 업무개요

- (1) 업무주체 : 시·군·구
- (2) 업무개요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3) 결정단위 : 개인

참고 | 기초연금 업무단계별 결정단위

| | | | | | |
|-------|--------|---------|-------|----------|-------------|
| 업무 단계 | 대상자 선정 | 기초연금액산정 | 부부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 결정 단위 | 가구 | 개인 | 개인 | 가구+개인 | 개인 |

- (4) 적용기준 :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 수급권(‘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 등
- (5) 결정절차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6) 결정방법 :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내용,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 개요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2) 기초연금액 산정

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 ※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 적용 산식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부가연금액}$
-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 ☞ 적용 산식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연계퇴직연금액의 } 1/2)\} + \text{부가연금액}$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주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연금·연계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

다.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3)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 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4)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개인별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제 4 편

II.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법 제5조)

1. 산식 개요

가. 일반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나. 2017년 산식

- '17.1월 ~ 3월
 : 기초연금액 = (20만 4,010원 - 2/3 × A급여액) + 10만 2,005원
- '17.4월 ~ '18.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2. 기준연금액 (법 제5조 제2항)

가. 개념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반영(차감)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

나. 조정

- (적용기간) 매년 4.1일 ~ 차년도 3.31일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 준용)
- (연도별 조정)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
- (5년마다 조정) 매 5년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준연금액 조정
 ※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 노인빈곤 실태조사와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함께 실시

다. 기준연금액

- '17.1월 ~ 3월 : 20만 4,010원
- '17.4월 ~ '18.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3. 부가연금액

가. 개념

-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기준연금액-2/3 × A급여액)에 부가적으로 더해 주는 금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특례 대상자의 기초연금액

나. 조정

- 기준연금액의 조정방식과 동일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적용기간) 매년 4.1일 ~ 차년도 3.31일

다. 부가연금액

- '17.1월 ~ 3월 : 10만 2,005원
- '17.4월 ~ '18.3월 :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4.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가. 개요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나. 조정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 (적용기간) 매년 4.1일 ~ 차년도 3.31일

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 개인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가능

Ⅲ. 기초연금액의 산정 (법 제5조)

1.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이하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연계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

나.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지급받고 있는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

- 중복급여 조정²⁵⁾으로 국민연금·연계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노령연금·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25) 「국민연금법」 제56조 및 「연금연계법」 제1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

- 「연금연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계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반영하여 감액
- 「연금연계법」 제18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²⁶⁾ 중인 사람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수급권자²⁷⁾로서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법 제5조~제7조)

가. 개요

-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 결정 산식에 개인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넣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대상
- 국민연금 A급여액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적용대상 :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연금연계법」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미만)
 -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주의 「국민연금법」 및 「연금연계법」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의 경우 A급여액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함

26)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음
 27)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산정방법

① A급여액 적용 산식

※ 국민연금·연계연금 미청구 또는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실제 받고 있는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에 의하여 동일 산식을 적용

참고 |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식

● 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¹⁾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²⁾

● 연계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¹⁾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³⁾} + 부가연금액²⁾

- 1) 기준연금액 : '17.1월~3월 20만 4,010원, '17.4월~'18.3월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 2) 부가연금액 : '17.1월~3월 10만 2,005원, '17.4월~'18.3월 '17. 3월 별도 통보 예정
- 3)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는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

- 기준연금액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수급권에 해당하는 'A급여액' 및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더한 금액을 차감

예시 |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가 이혼 시 : 본인의 노령연금의 A급여액과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②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라. 기초연금액 : 부가연금액 이상 ~ 기준연금액 이하로 산정

참고 |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 기준

- ☞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의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과 소급지급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또한 환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감액하기 이전 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국민연금을 미신청한 경우 또는 연기연금 신청 중인 자는 실제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없더라도, 수급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민연금액으로 산정

3.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법 부칙 제5조)

가. 적용대상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 i)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ii)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나. 산정방법

- 기준연금액의 50% 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자·수급권자 등의 전월말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A급여액 등을 매월초 「행복e음」으로 전송
 - ※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일괄 조정되는 4월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4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등을 예상 산출하여 4월초 「행복e음」으로 전송/ 4월급여반영
- 「행복e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자동 계산

제 4 편

IV. 기초연금액의 감액 (법 제8조)

1. 부부감액 (법 제8조 제1항)

가. 개요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 부부 2인 수급 가구

다. 적용단위

- 개인 단위로 적용 :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법 제8조 제2항)

가. 개요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즉,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간 차이보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더 큰 경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다. 적용단위

-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단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3.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가.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1)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 | | | | | |
|-------------------------------|-----------------------|-----------------------|-----------------------|-----------------------|-----------------------|
| 소득인정액('17년) | 101만원 미만 | 101만원 이상~ 103만원 미만 | 103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105만원 이상~ 107만원 미만 | 107만원 이상~ 109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204,01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17년) | 109만원 이상~ 111만원 미만 | 111만원 이상~ 113만원 미만 | 113만원 이상~ 115만원 미만 | 115만원 이상~ 117만원 미만 | 117만원 이상~ 119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2)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 | | | | | |
|-------------------------------|---------------------------|---------------------------|---------------------------|---------------------------|---------------------------|
| 소득인정액('17년) | 172.4만원 미만 | 172.4만원 이상~ 174.4만원 미만 | 174.4만원 이상~ 176.4만원 미만 | 176.4만원 이상~ 178.4만원 미만 | 178.4만원 이상~ 180.4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204,01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17년) | 180.4만원 이상~ 182.4만원 미만 | 182.4만원 이상~ 184.4만원 미만 | 184.4만원 이상~ 186.4만원 미만 | 186.4만원 이상~ 188.4만원 미만 | 188.4만원 이상~ 190.4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3)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6,400원)

| | | | | |
|-------------------------------|---------------------------|---------------------------|---------------------------|---------------------------|
| 소득인정액('17년) | 162.4만원 미만 | 162.4만원 이상~ 166.4만원 미만 | 166.4만원 이상~ 170.4만원 미만 | 170.4만원 이상~ 174.4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 326,400원 | 28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 소득인정액('17년) | 174.4만원 이상~ 178.4만원 미만 | 178.4만원 이상~ 182.4만원 미만 | 182.4만원 이상~ 186.4만원 미만 | 186.4만원 이상~ 190.4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 16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나. 적용방법

(1)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지급
-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예시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4,01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2만원인 경우

-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4,010원
- ② 소득인정액 102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예시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6만원인 경우

-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2만원
- ② 소득인정액 106만원 구간의 금액 : 14만원
-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2만원

(2) 부부 2인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 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
- 다만, 부부 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 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2만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2만원으로 결정·지급 (기초연금 급여액은 최소 2만원)

다. 기초연금 급여액 표

(1) 단독가구 (bp = 기초연금액)

| | | | | | |
|-------------|------------------------|------------------------|------------------------|------------------------|------------------------|
| 소득인정액('17년) | 101만원 미만 | 101만원 이상 ~ 103만원 미만 | 103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 | 105만원 이상 ~ 107만원 미만 | 107만원 이상 ~ 109만원 미만 |
| 기초연금 급여액 | bp | Min (bp, 18만원) | Min (bp, 16만원) | Min (bp, 14만원) | Min (bp, 12만원) |
| 소득인정액('17년) | 109만원 이상 ~ 111만원 미만 | 111만원 이상 ~ 113만원 미만 | 113만원 이상 ~ 115만원 미만 | 115만원 이상 ~ 117만원 미만 | 117만원 이상 ~ 119만원 이하 |
| 기초연금 급여액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2만원 |

(2) 부부 1인 수급 가구 (bp = 기초연금액)

| | | | | | |
|-------------|----------------------------|----------------------------|----------------------------|----------------------------|----------------------------|
| 소득인정액('17년) | 172.4만원 미만 | 172.4만원 이상 ~ 174.4만원 미만 | 174.4만원 이상 ~ 176.4만원 미만 | 176.4만원 이상 ~ 178.4만원 미만 | 178.4만원 이상 ~ 180.4만원 미만 |
| 기초연금 급여액 | bp | Min (bp, 18만원) | Min (bp, 16만원) | Min (bp, 14만원) | Min (bp, 12만원) |
| 소득인정액('17년) | 180.4만원 이상 ~ 182.4만원 미만 | 182.4만원 이상 ~ 184.4만원 미만 | 184.4만원 이상 ~ 186.4만원 미만 | 186.4만원 이상 ~ 188.4만원 미만 | 188.4만원 이상 ~ 190.4만원 이하 |
| 기초연금 급여액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2만원 |

(3) 부부 2인 수급 가구 (bp₁+bp₂ =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후 합산한 금액)

| | | | | |
|-------------|-------------------------------------|--|--|--|
| 소득인정액('17년) | 162.4만원 미만 | 162.4만원 이상 ~ 166.4만원 미만 | 166.4만원 이상 ~ 170.4만원 미만 | 170.4만원 이상 ~ 174.4만원 미만 |
| 기초연금 급여액 | (bp ₁ +bp ₂) | Min [(bp ₁ +bp ₂), 28만원] | Min [(bp ₁ +bp ₂), 24만원] | Min [(bp ₁ +bp ₂), 20만원] |
| 소득인정액('17년) | 174.4만원 이상 ~ 178.4만원 미만 | 178.4만원 이상 ~ 182.4만원 미만 | 182.4만원 이상 ~ 186.4만원 미만 | 186.4만원 이상 ~ 190.4만원 이하 |
| 기초연금 급여액 | 16만원 | 12만원 | 8만원 | 4만원 |

예시 | 기초연금액이 부부 각각 20만4,010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인 경우

-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32만6,400원(16만3,200원 + 16만3,200원)
- ② 소득인정액 180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6만원, 婦 6만원**
-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3,200원, 婦: 16만3,2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4,010원, 婦 10만2,005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인 경우

-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4,800원 (16만3,200원 + 8만1,600원)
- ② 소득인정액 180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8만원, 婦 4만원**
-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3,200원, 婦: 8만1,6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4,010원, 婦 10만2,005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64만원인 경우

-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4,800원 (16만3,200원 + 8만1,600원)
- ② 소득인정액 164만원 구간의 금액 : 28만원
-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4만4,800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16만3,200원, 婦 8만1,600원**
- ※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예시 |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4,010원, 婦 10만2,005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인 경우

-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4,800원 (16만3,200원 + 8만1,600원)
- ② 소득인정액 190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4만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6,660원, 婦 2만원**
- ※ 20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3,200원, 婦: 8만1,6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夫: 26,660원, 婦: 13,330원)하고, 2만원 미만인 婦는 2만원으로 결정



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법 제6조)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출하여 전송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을 「행복e음」에서 자동 적용하여 기초연금액 산출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참고 |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 | | | | |
|----------------------------|-----------------------------------|---|---|----------------------|
| $1.2x(A+B)x(1+0.05n/12)$ | = | $1.2xAx(1+0.05n/12)$ | + | $1.2xBx(1+0.05n/12)$ |
| 기본연금액 | | <공통부분> | | <소득비례부분> |
| × | | × | | |
| 가입기간별 지급률 | (20년 이상)100% (20년 미만)1월당 5%/12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
| × | | × | | |
| 1-감액율(조기신청) 1+가산율(연기신청) | (조기)1월당 -0.5% (연기)1월당 +0.6% | | | |
| × | | | | |
| (1+소비자물가변동률) | 기초연금 지급시점까지 매년 조정 | (1+소비자물가변동률) | | |
| ÷ | | ÷ | | |
| 12(월) | 월금액 환산 | 12(월) | | |
| ↓ | | ↓ | | |
|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 | | 기초연금법상 상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²⁸⁾ | | |

* 1.2 : 비례상수(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하여 적용)
 A : 연금 수급 前 3개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B :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n : 20년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월)

제 4 편

- 국민연금 급여(기본연금액)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되는 공통적인 부분과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부분으로 구성
- 이 중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적인 부분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임
 -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00%, 20년 미만이면 매 1개월당 5/12%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 ~ 200%이하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①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②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의 200%를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①에 따라 산정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 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

$$\{ \text{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text{A급여액} + \text{연계퇴직연금액의 } 1/2) \} + \text{부가연금액}$$
 -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
 - ②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text{기준연금액의 } 250\% - \text{국민연금 급여액등}$$

3.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가.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60세(수급개시연령, 이하동일) 도달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²⁸⁾받고 있거나 그 지급을 연기²⁹⁾ 중인 사람 및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³⁰⁾을 포함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도입·확대 당시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자로서 60세 도달, 가입기간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한 사람(특례노령연금)

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 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라.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로서 60세 도달, 가입기간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한 사람

바. 「연금연계법」 제10조에 의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참고 |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1953년 이후 출생자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



주의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미청구한 자 및 본인 귀책사유로 지급이 정지된 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포함(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하나, 분할연금 미청구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기준연금액을 적용)

28)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55세(수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조기노령연금)
 29)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60~64세의 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고, 종료시 연기기간에 따라 증액된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30)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64세의 기간 중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수급연령에 따라 일부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음(재직자노령연금)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가. A급여액의 계산(법 제5조제4항제2호)

-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하 “A값”)을 기초로 산정

참고 | 구체적인 A급여액의 산정방법³¹⁾

$$\text{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1 \times \text{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2 \times \text{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초연금 지급시점까지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div 12 \text{ (月)}$$

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가입기간 | 1988~1998년 | 1999~2007년 | 2008~2027년 | 2028년 이후 |
|------|------------|------------|-------------------------------|----------|
| 비례상수 | 2.4 | 1.8 | 1.5 ~ 1.215 (매년 0.015씩 감소) | 1.2 |

2)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

- 가. 2001년 2월 이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연금수급 전년도에의 평균소득월액
- 나. 2001년 3월 이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연금수급 전 3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 다. 가, 나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A값에 2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마다 A값에 5%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 $\Rightarrow A \times (1+0.05 \times \alpha)$
-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A값에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마다 A값에 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Rightarrow A \times (1- 0.05 \times \alpha)$

31) 1952년 1월생 A급여액 산정 예시 ▶ 국민연금 가입 : '98.7월 ~ '12.1월(163개월)

▶ 국민연금 지급사유발생(60세 도달) : 2012.1.25. ▶ 기초연금 신청 : 2017.1.25.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구 분 | 계 | '88.1월~'98.12월 | '99.1월~'07.12월 | '08.1월~'08.12월 |
|------|----------------|----------------|----------------|----------------|
| 비례상수 | - | 2.4 | 1.8 | 1.5 |
| 가입기간 | 163개월 | 6개월 | 108개월 | 12개월 |
| 구 분 | '09.1월~'09.12월 | '10.1월~'10.12월 | '11.1월~'11.12월 | '12.1월 |
| 비례상수 | 1.485 | 1.47 | 1.455 | 1.44 |
| 가입기간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1개월 |

- (분할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A급여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A급여액의 1/2을 적용
 - 이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는 원래의 A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A급여액을 재계산
 - ※ 분할연금 미신청자는 A급여액을 계산하지 않음(기초연금액 적용)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법 제6조제1항)

- 「국민연금법」 및 「연금연계법」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

5.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기준

가.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적용 받는 경우

- (연금지정)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중인 경우
 - (A급여액) 연기 중인 기간에 대해 연기 직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노령연금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비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계산방법과 동일
- (연금지정)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 (A급여액)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등)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적용

⇒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195,588.76원
 = (2.4×6개월+1.8×108개월+1.5×12개월+1.485×12개월+1.47×12개월+1.455×12개월+ 1.44×1개월)
 / 163개월 × A × [1-0.05÷12×(240-163개월)] × 1.0983 ÷ 12(월)

- ▶ 2.4, 1.8, 1.5, 1.485, 1.47, 1.455, 1.44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 6개월, 108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개월 : 국민연금 가입연도별 가입기간 (합계 163개월)
- ▶ A : 국민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에 적용하는 A값(1,824,109원)에 기초연금 신청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A값(2,003,470원)
- * 국민연금 지급사유발생시점부터 기초연금 신청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12~'16) : 1.0983
- ▶ [1-0.05÷12×(240-163개월)] :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가입기간(77개월)에 대한 감액 비율

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조기 지급되는 경우


- (A급여액) 조기 지급·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연령별 지급율 및 소득활동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미적용)
- (국민연금 급여액등) 조기 지급·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 적용(연령별 지급률 및 소득활동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적용)

다.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미청구, (일시)정지 등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경우

-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까지 급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예시 | 노령연금 미청구 상태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급여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A급여액을 산정함
 다만, 유족연금 선택시 그 때부터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노령연금정지자로 적용

- 「국민연금법」 제86조제1항, 제122조의2제3항 및 「연금연계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귀책 사유로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³²⁾에는 정지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주의**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정지와 구분(법 제5조제6항제2호가목)

32) 1.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권 확인을 위한 서류,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단의 확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연금의 소급지급 또는 환수금 충당의 경우

- 지연청구 등으로 2개월분 이상의 연금이 소급하여 지급되는 경우 1개월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연금 급여액에서 환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전액 충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 충당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마.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가입기간이 변동하는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재계산하며, 이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통보(확인)된 달부터 적용

- 체납보험료 납부, 자격변동 등으로 연금액(가입기간)이 변경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가입기간·연령 요건 충족)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한 경우(임의계속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A급여액 재계산)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정지(재가입)된 후에 재수급할 경우(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A급여액 재계산)
-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³³⁾ 분할납부 중인 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에 추가로 납부한 경우

바. 분할연금수급권자의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조기·재직자·연기·특례)에 관계없이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

바-1. 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 분할연금 미신청자가 제척기간(3년) 경과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월부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적용하며,
-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부터 변경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적용(미소급)

33)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다시 가입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반납) 또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이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가입기간에 산입(추납)

바-2.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 분할연금 청구 전에 포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변동 없이 적용(분할연금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차감하지 아니함)
- 분할연금을 지급받던 중 포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수급권 포기 전 금액을 계속 적용(분할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차감)

※ 그 밖의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산정은 국민연금 급여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급여액 중 A급여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

사. 「국민연금법」 제35조에 따른 연금액 상한 적용자 및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A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3조에 따른 연금액 상한³⁴⁾ 적용자는 상한 적용 전의 연금액에서 A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한 적용 후의 연금액에 곱하여 계산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협정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

-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으로 가상하였을 때의 연금액을 산정
-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

34)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월 연금액은 해당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것을 초과할 수 없음(「국민연금법」 제53조)

참고 |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기준 비교

| 구 분 | | A급여액 (B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 |
|----------|---------------------|-----------------------------|--------------------------------|---------------|---|
| 노령 연금 | 일반수급자 | 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지급률) | 좌동 | ○ | |
| | 미청구 | 예상연금액 | 좌동 | × | |
| | 일시중지, 정지 | 정지 前 연금액 | 좌동 | × | |
| | 조기지급 | 감액 前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미적용) | 감액 後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적용) | ○ | |
| | 연 기 | 연기 중 | 연기 前 연금액 | 좌동 | × |
| | | 연기종료 | 가산 前 연금액 | 가산 後 연금액 | ○ |
| 분할 연금 | 수급자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A급여액 균분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균분 | ○ | |
| | 미청구자 | 미 산정(→기준연금액 적용) | 좌동 | × | |
| | 지급정지자 ¹⁾ | 정지 前 연금액 | 좌동 | × | |

6.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가. 개요

- 동일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및 「연금연계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중복하여 생길 수 있음

참고 | 중복급여 수급권 발생 예시

- ① (국민연금 중복수급)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 ② (연계급여 중복수급)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 ③ (국민연금+연계급여)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 그 경우 각각의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급여 조정방법을 감안하여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산정

나. 기본방향

- 국민연금·연계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의 수급권에 따라 계산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법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 다만, 각 법령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가 지급정지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법 제5조제6항제2호가목)
 - 「연금연계법」 제18조에 따라 연계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법 제5조제6항제2호나목, 다목)
 - 「연금연계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아닌 급여 수급자가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 미청구로 급여선택이 없었던 경우에는 현재 수급중인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
 - 급여선택 후에는 선택된 급여에 따라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계산하고 적용시기는 확인된 때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분할연금 수급권자
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라.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계산 및 적용

- 중복하여 수급권이 발생한 급여 가운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만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

- 「국민연금법」 제56조 또는 「연금연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급여는 A급여액 계산 및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의 지급되는 급여액이 없으나, A급여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수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 또는 일시정지 되는 경우
- 중복급여 조정 사유 이외에 각 직역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중복급여로서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법 제3조제3항제4호)
 -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2개 이상의 국민연금·연계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 급여에 대한 A급여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
 -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분할연금 및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연계퇴직연금 이외에 지급되는 급여는 고려하지 않음

예시 | 중복급여 수급자의 A급여액 산정 예시

-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 ☞ 노령연금 A급여액
- ②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급
 - ☞ 노령연금 A급여액 + 분할연금 A급여액
- ③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급
 - ☞ 연계노령연금 A급여액+ 연계퇴직연금액의 1/2+분할연금 A급여액

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및 적용

- 2개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인 급여와 아닌 급여의 일부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급되는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수 만큼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균분된 유족연금액의 30%를 합산한 금액
- 「국민연금법」 제82조 제2항, 동법 제84조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중복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계산하지 않음
-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제외

참고 | 「연금연계법」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관련

- 「연금연계법」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2항
 -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
- 「연금연계법」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제2항
 -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

**각 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급여액등 적용 사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중복급여 수급권 | 선택급여(지급액) |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
|------------------|-----------|------------------|---------------------------|------------------|
| 노령 (분할) 연금 | 분할연금 | 노령(분할)+분할 | 노령(분할) A급여액 + 분할 A급여액 | 노령(분할) + 분할 |
| | 유족연금 | 노령(분할)+유족×30% | 노령(분할) A급여액 | 노령(분할) + 유족 30% |
| | | 유족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 장애연금 | 노령(분할) | 노령(분할) A급여액 | 노령(분할) | |
| | 장애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중복급여 수급권 | 선택급여(지급액) |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
|----------------------|----------------|-----------------------|---|--|
| 연계 노령 연금 | 연계노령 유족연금 | 연계노령 + 연계노령유족×30% | 연계노령 A급여액 | 연계노령 + 연계노령유족 30% + 연 계퇴직 + 연계퇴직유족의 1/2 |
| | | 연계노령유족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연계노령유족 + 연계퇴직 + 연계퇴 직유족의 1/2 |
| | 유족연금 (국민연금) | 연계노령+유족×30% | 연계노령 A급여액 | 연계노령 + 유족 30% + 연계퇴직 |
| | | 유족 | 유족 + 연계퇴직 또는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유족 + 연계퇴직 또는 유족(연계퇴직이 없는 경우) |
| 장애연금 (국민연금) | 연계노령 | 연계노령 A급여액 | 연계노령 + 연계퇴직 | |
| | 장애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장애 + 연계퇴직 | |
| 연계 퇴직 연금 | 연계퇴직 유족연금 | 연계퇴직 + 연계퇴직유족×50%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2개 급여 모두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 연계퇴직 + 연계퇴직유족의 1/2 |
| 연계 노령 유족 연금 | 연계노령 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 연계노령유족×30%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유족연금 (국민연금) | 연계노령유족+유족×30%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 유족+연계노령유족×30%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노령연금 (국민연금) | 연계노령유족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장애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계노령유족×30% | 노령 A급여액 | 노령+연계노령유족 30% |
| 장애연금 | | 연계노령유족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장애+연계노령유족×30%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연계퇴직연금 지급하지 않음)하게 되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산정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적용

- 각 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급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수급중인 급여 | 중복급여 |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
| 노령(분할)연금 | 유족·장애연금 | 노령(분할) | 좌동 |
| 연계노령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 | 좌동 |
| 유족·장애연금 | 노령(분할)연금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연계노령연금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연계노령유족 | 노령(분할)연금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 연계노령연금 |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좌동 |

* 노령(분할)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장애연금 또는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수급권 발생여부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청구 전에는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할 수 없음

- 기타

| 중복급여 수급권 발생 | | 기초연금액 산정 |
|--|--|----------------|
| 국민연금 · 연계급여 · 사회보장급여 ²⁾ | 직역연금 ¹⁾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 | 사회보장급여 ²⁾ | 기준연금액 |

1) 직역연금(법 제3조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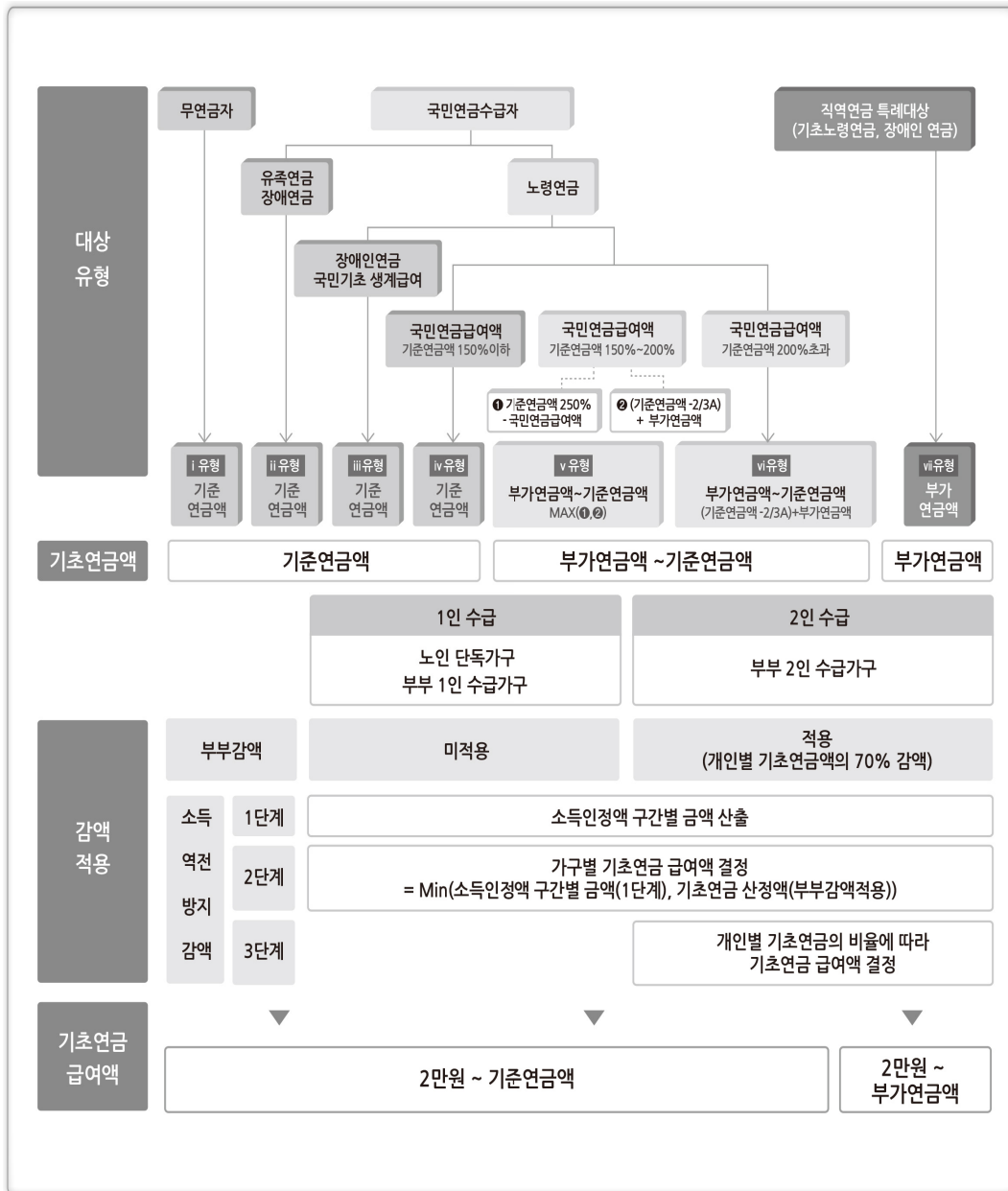
2)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6항제2호나목, 다목)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별지 1】

대상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지역연金的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

참고

대상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적용 사례

①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 | | |
|----------|--|---|
| 대상유형 | i 유형 |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원 |
| 기초연금액 | 본 인 : 204,010원(기준연금액 적용) 배우자 : 204,010원(기준연금액 적용) |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63,2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326,400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부부 2인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120,00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㉒)인 120,000원으로 결정 ※ Min(㉑) 산정된 기초연금액 326,400원, ㉒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120,000원) |
| | |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
| 기초연금 급여액 |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60,000원으로 결정 | |
| 대상유형 | ii 유형 |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원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90만원 |
| 기초연금액 | 본 인 : 204,010원(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204,010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9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204,01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204,01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㉑ 204,010원,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㉒ 204,010원) |
| | |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
| 기초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급여액은 204,010원으로 결정 | |



| | | |
|------|---------------|--|
| 대상유형 | iii 유형 |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국민 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10만원 |
|------|---------------|--|

| | |
|-------|---|
| 기초연금액 | 본 인 : 204,010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
|-------|---|

| | | |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204,010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11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100,00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㉒)인 10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㉑ 204,010원,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㉒ 100,000원) |
| | |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

| | |
|-------------|-------------------------|
| 기초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급여액은 100,000원으로 결정 |
|-------------|-------------------------|

| | | |
|------|--------------|--|
| 대상유형 | iv 유형 |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14만원 |
|------|--------------|--|

| | |
|-------|---|
| 기초연금액 | 본 인 : 204,010원(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기준연금액 적용) |
|-------|---|

| | | |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204,010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114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60,00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6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㉑ 204,010원,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㉒ 60,000원) |
| | |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

| | |
|-------------|------------------------|
| 기초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급여액은 60,000원으로 결정 |
|-------------|------------------------|

② 국민연금 A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 대상

| | | |
|------|-------------|---|
| 대상유형 | v 유형 | (본인) 국민연금 급여액 40만원(A급여액 15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72만원 |
|------|-------------|---|

| | |
|-------|--|
| 기초연금액 | <p>- 본인 : 204,010원</p> <p>※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306,015원) 초과 200%(408,020원) 이하인 경우로</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적용 산식¹⁾과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²⁾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p>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인 204,01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p> </div> </div> <p>1) (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A$) + 부가연금액 = (204,010원 - $\frac{2}{3} \times 150,000$원) + 102,005원 = 206,015원 → 204,010원</p> <p>2)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510,025원 - 40만원 = 110,025원</p> <p>- 배우자 : 204,010원(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로 기준연금액 적용)</p> |
|-------|--|

| | | |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63,2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326,400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172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200,00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㉑)인 20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㉑ 326,400원,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㉒ 200,000원) |
| | |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

| | |
|----------|--------------------------------|
| 기초연금 급여액 |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100,000원으로 결정 |
|----------|--------------------------------|

제4편 기초연금액 결정

| | | |
|----------|--------------|--|
| 대상유형 | vi 유형 |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 80만원(A급여액 36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88만원 |
| 기초연금액 | | - 본 인 : 102,005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초연금액의 200%(408,020원) 초과한 경우로 ●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적용 산식 ¹⁾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02,005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1) (기초연금액 - 2/3 × A) + 부가연금액 = (204,010원 - 2/3 × 360,000원) + 102,005원 = 102,005원 - 배우자: 204,010원('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초연금액의 150% 이하로 기초연금액 적용)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적용(부부 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본인 81,600원, 배우자 163,2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244,800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18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40,00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㉒)인 4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㉑ 244,800원,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㉒ 40,000원) |
| | |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
| 기초연금 급여액 | |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본인 20,000원, 배우자 26,660원으로 결정 *기초연금 급여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2만원으로 지급 |

제 4 편

③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 | | |
|----------|---------------|---|
| 대상유형 | vii 유형 | (본 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 기초연금 수급 특례를 인정받은 자 (배우자) 만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70만원 |
| 기초연금액 | | 본 인 : 102,005원(부가연금액 적용) |
| 감액 적용 | 부부 감액 |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102,005원(㉑) |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1단계] 부부 1인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17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인 204,010원(㉒) |
| | |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㉑)인 102,005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㉑ 102,005원,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㉒ 204,010원) |
| | |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
| 기초연금 급여액 | | 기초연금 급여액은 102,000원으로 결정(원단위 절사) |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5편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 I. 지급 결정 및 통지
- II. 기초연금의 지급
- III. 미지급 기초연금
- IV. 수급권의 보호

I. 지급 결정 및 통지 (법 제13조)

1. 지급 결정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지급 여부 및 기초연금 급여액 등 결정)
 - ※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 연금지급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행복e음」에 기재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 6호) 및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서식 7호(을-4))를 생성(‘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출력 가능)

2. 결정 통지

(1) 통지방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예정 연금액 등 결정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 5호)’를 신청자 등에 통지 (이의신청제도 안내도 포함)
 -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 신청자가 통지서 발송전에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필로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2) 통지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확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

(3) 유의사항

- 기초연금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
 - 다만, 부득이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행복e음」 상담내역에 동의 여·부, 제공 받은자, 제공내용 등을 기록)
- ※ 기초연금 신청, 조사, 수급(권)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II. 기초연금의 지급 (법 제14조)

1. 지급 방식

가.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단,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신청에 의해서 i)부부1인 수급가구를 부부2인 수급가구로 전환하고, ii)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는 생일도래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의 수급권 포기

- 수급자가 수급권 포기를 희망할 경우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를 제출받아 수급권 상실처리 후 수급권을 포기한 그 달까지 연금을 지급함. 다만 급여 생성 이전에 포기하면서 포기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주의 주민등록주소자

- 주민등록주소자의 경우 주소일이 속한 달에 수급권 상실 처리하되, 기초연금 급여는 주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주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전입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전출지)에서 지급
-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행복e음」에서 급여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기관에서 급여 지급

나. 지급 방법

(1) 기초연금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 (예외①)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예외②) 다음과 같은 경우로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식12호)이 있는 때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단, 수급자 또는 “예외②”의 계좌로 지급받을 자가 금융기관·우편판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가능

(2)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3)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1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신청 또는 미지급연금을 청구한 경우
 -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후 사유가 소멸한 사람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소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1)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예시 |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경우

- ①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A구인 경우 : A구가 지급
- ②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B시인 경우 : B시가 지급
- ③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A구 또는 B시가 아닌 C시·군·구인 경우 : C시·군·구가 지급

(2)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사회복지시설 입소협약을 체결한 경우

예시 | 경상북도 A시와 대전광역시 B구간 시설입소 협약을 체결하여 A시 노인이 B시 시설에 입소하고 A시 노인이 주소지를 시설소재지 B로 변경하여도 A시에서 연금 지급하기로 협약(MOU)체결

- ⇒ A시 노인이 B시로 주소지 변경 후 시설 입소한 경우 : A시에서 지급
- ※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주소지 행정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입소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지급 가능

Ⅲ. 미지급 기초연금 (법 제15조)

1. 개요

(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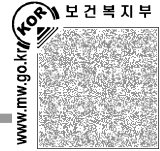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급여액

(2) 수급자 사망 시 지급방법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
 -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됨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 동 순위의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 순위권자의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청구에 따라 각각 지급



3. 청구절차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3호)」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한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우편 송부
-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 13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3호)」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 10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1) 결정통지

-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청구인과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2) 지급대상 및 방법

- 청구권자가 우선순위자로서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함
- 미지급 기초연금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에 입금

IV. 수급권의 보호 (법 제21조)

1. 원칙

-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음

2.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 행복지킴이 통장)

-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의 계좌만 사용 가능

참고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 안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 불가)

◎ 관련 근거

-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절차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
- (기존발급자) 압류방지 가입대상 복지급여*의 기존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구좌등록 수정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 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I. 이의신청
- II.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III. 행정심판



I. 이의신청 (법 제22조)

1.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 이의신청 주체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3. 이의신청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³⁵⁾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³⁶⁾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 기초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

35)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

36)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4. 이의신청 절차

(1) 개요

-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서면으로 접수
 -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서식 9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 (대리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 10호) 및 대리인 신분증
 - ※ 배우자가 대리인일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3) 이의신청서 송부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즉시 송부

(4) 심사·처리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임의서식)를 작성
 - 직역연금 관련 사항은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국민연금급여액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이의신청 결정
 - (각하)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 (결정변경)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결정
-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조사 의뢰 전에 이의신청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희망)자와 필요시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및 확인요청 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

(5) 결과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식 15호)
 - ※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
- 단, 청구인이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제출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5.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 (급여신청 건) 급여신청월로 소급 적용(사전신청의 경우 지급월로 소급)
- (급여신청 이외의 건) 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6.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 6 편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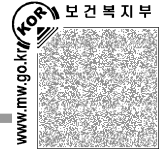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
-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대상 인정에 대한 심의·의결
-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

2.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가능
 - * 위원회 명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의신청위원회”라 함
 -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음

3.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
-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의 자격
 -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 ※ 위원구성 예시 : 위원장 기초연금 담당국장, 간사 기초연금 담당자, 연금·사회복지분야 외부 전문가 등



4.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 또는 서면심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시·군·구는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 급여결정·변경·지급정지·수급권 상실 등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재산가액의 산정 및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특례 적용을 위한 이의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례 적용 가능
 -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범위 관련 사항
 - 사실이혼을 주장하나,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급자동차 중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사항
 - 기타(중여)재산 산정에 관련 사항
 -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출비용을 본인소비 분으로 인정하는 사항
 - 사업부도 등으로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곤궁하여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등(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Ⅲ.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개요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2) 행정심판기관

- 재결청
 -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됨
- 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가 재결청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 대상 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2) 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3)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 하여 청구
 -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함

(4) 심판청구의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6조, 제23조제1항)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 각하재결-행정심판 제기 요건의 흠결
- 기각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인용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5. 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7편 수급자 관리

- I. 수급자 사후관리
- II.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
- III. 부당수급자 관리
- IV.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I.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자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수급자의 본인신고 또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기초연금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 관리 필요

| 단 계 | 업 무 처 리 내 용 |
|---|--|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제1단계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신고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변동, 인적사항 변동, 국민연금 관련 사항 변동 -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수급권상실, 지급정지, 지급계좌변경 등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신고 :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에 급여변경 신고 내용 입력 및 관련 서류 스캔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신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제2단계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된 급여변경신청서 확인 - 변경신고사항 항목별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 「행복e음」에서 변동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자·보장 결정 클릭 ※ 수급자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에게 확인 후 반영 - 최종 급여생성 전까지 반영되는 변동사항을 당월 급여지급에 반영 ■ 확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의뢰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3단계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격 등을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

제 7 편

1. 사후관리 개요

(1) 확인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주소지 변경 등

(2)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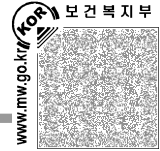
- 수급자의 신고 또는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 「기초연금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호
-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보관

참고 | 변동사항의 지급반영 시점

| 적용방법 | | 정보 종류 | 인적 사항 | 소득·재산 사항 | 국민연금 관련사항 |
|------------------------|--------------|-------|-----------|---------------------------|-------------|
| 지급 반영 시점 ¹⁾ |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 | 발생한 다음달부터 | 확인(통보)된 ²⁾ 달부터 | 확인(통보)된 달부터 |
| | 수급권 상실 | | 발생한 다음달부터 | 확인(통보)된 다음달부터 | - |
| | 지급 정지 및 지급재개 | | 발생한 다음달부터 | - | - |

1) '지급반영 시점' 이란 변동사항을 급여지급에 반영하는 시점을 의미

2) '확인(통보)시'는 본인신고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을 의미



2.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 신고사항 (법 제18조)

●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 등
 - ※ 주소지 변경 사항은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소멸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 본인 또는 배우자에 관한 직역연금의 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수급권 정보
- (지급 정지)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발생 및 소멸

● 소득·재산 사항

-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사업자등록, 휴·폐업 등 사업 형태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예금, 증권(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상품(주택·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환매,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 국민연금 관련 사항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변동 및 국민연금 급여액 변동
- 연계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직역연금 수급액 변동

● 지급계좌 변경

(2) 신고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공단이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계서류 송부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각 1부
 - ※ 수급권 상실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서식 14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관련 증빙서류
 -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10호)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로 의제 처리

(3) 처리결과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통지(서식 5호)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참고 | 중점관리 수급자 조사

(1) 대상

- 「행복e음」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기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수급자(중점관리 대상)

예시 | 중점관리 대상 및 분야

-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 입금 수급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인 수급자
- 사실상 혼인(이혼)관계에 있는 수급자(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의 배우자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확인된 자
- 보건복지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수급자

(2) 조사수행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간조사계획 및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확인조사 분야·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간 확인·조사 수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 확인·조사는 위탁자가 수행한 것으로 봄

(3)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등을 변경하고, 환수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 수행

3.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가. 기초연금 급여액의 증감에 따른 업무처리**

(1) 기초연금 급여액의 증감 사유

-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소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소멸, 직역연금 특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등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 소득·재산사항(증가, 감소)
- ‘국민연금 급여액등’ 변경, 국민연금 A급여액 변경 등

(2) 변동시점 및 지급반영

- 인적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소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소멸, 직역연금 특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 등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
- 소득·재산사항 변동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국민연금 A급여액의 변동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3) 처리절차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등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 급여액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변경처리

예시 |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사실 이혼한 경우

- 사실이혼의 경우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행복e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한 달을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로 보아 신고한 달에는 부부 2인 수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
 -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 달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

● 주소지 변경

- 주소지 변경은 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 계약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처리

| 전 출 | 전 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처리 - 원본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이 원칙, 관련서류는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 예외적으로 관련서류 이송이 필요할 시 사본 이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및 소멸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변경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급여 변경처리

● 직역연금 특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

- 「행복e음」 변동알림을 통해 확인하여 급여 변경처리

● 소득·재산사항(증가, 감소)

-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적용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의 변동 등

-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및 직역연금공단으로부터 회신된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 변동자료를 자동반영하여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행복e음」을 통해 회신되기 이전에 신청자·수급권자가 변경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 A급여액 자료 또는 소명자료(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 공적이전소득을 산정하고, 변경된 A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지급

※ 지연신청 등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지역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더라도 본인신고를 통해 확인된 달부터 A급여액이 변경됨에 유의

*** (「행복e음」 실시간 A급여액 정보 조회)**

상담·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 기초연금 맞춤정보안내

- 다만, 본인신고에 의해 기초연금 급여액을 변경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동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예상급여액 확인 후 해당월 기초연금 급여액에 상계처리 필요

*** (「행복e음」 예상급여액 확인)**

급여-급여대상자 관리-복지급여 예상액 계산기-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정보 등록 후 기초연금 실지금액 확인

(사례1)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국민연금 A급여액이 8월에 변경 결정된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 정보는 8월말을 기준으로 9월초에 「행복e음」에서 반영
-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인 9월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지급

(사례2)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국민연금 A급여액이 8월에 변경 결정되어 당월 신청자·수급권자가 변경신청을 한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 정보는 「행복e음」 A급여액 자료 및 소명자료(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를 통해 8월 기준 확인
- 본인신고에 의해 확인된 달인 8월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지급

-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 수행

나. 수급권상실에 따른 업무처리

(1) 수급권상실 사유(법 제17조)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p.159 참조)
- 선정기준액(소득·재산) 초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2)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 선정기준액(소득·재산) 초과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연금 지급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3) 처리절차

- 사망

| 구분 | 적용시점 | 처리절차 |
|---------------------|---------|--|
| 단독노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 | 수급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단독가구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 배우자 사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단독가구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삭제하고,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별도의 변경신고는 불필요)

●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 구분 | 적용시점 | 처리절차 |
|--------------------------|---------------------|--|
| 단독노인 또는 부부노인 |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 말소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변경신고 → 말소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 재외국민³⁷⁾ 주민등록자

| 구분 | 적용시점 | 처리절차 |
|--------------------------|---------------------|---|
| 단독노인 또는 부부노인 | 수급자의 재외국민 등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까지 연금 지급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 수급자의 재외국민 등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 배우자의 재외국민 등록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변경신고 →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국외이주 신고하여 주민등록은 유지(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관리)되나,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

3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재외동포(재외국민)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만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정정 전 연금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예시 |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처리방법

☐ 주민등록번호(연령) 상향 조정 시

- 2016년 1월 15일 연금신청, 2016년 8월 25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상향)된 경우
 【1940년 4월 1일 생(76세) → 1938년 4월 1일 생(78세)】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도 만 65세 이상으로 기 연금 수급 중(2016년 1월~)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등 별도 조치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연령) 하향 조정 시

- 2016년 3월 15일 연금신청, 2016년 8월 25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하향)된 경우
 【1951년 3월 10일 생(65세) → 1953년 3월 10일 생(63세)】
 ⇨ 2016년 3월~8월까지 기 지급 된 연금은 환수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 처리

●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본인신고, 공적자료 갱신 또는 확인조사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후 급여 변경·정지·상실 결정 및 통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공적자료를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변경·정지·상실 결정 및 통지

다. 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1) 지급정지 사유(법 제16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수용
-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의 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2) 지급정지 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 재소자
 - (형 선고 후 입소)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 (입소 후 형 선고) 형 선고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 후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 거주불명등록자
 -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한 경우 주민등록한 달까지 지급정지

(3)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정지
- ※ 지급정지 사유 소멸 시 신고한 달이 아닌 소멸한 달의 다음 달이 연금 개시 기준임에 유의

(4)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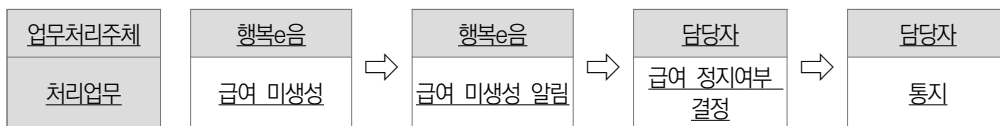
① 재소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 (수용증명서) 및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 '신고일 및 형의 종류' 확인
 - ※ 수용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상 형의 종류가 '금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신원조회 결과 '해당없음'인 경우 수용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또는 사면·복권장 징구
- 사유 소멸일인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 지급 결정

②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또는 필요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
 - ※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법 시행(2014.7.1) 이후 출국한 사람부터 60일 기산함('14.6.30일 이전 출국자는 180일 기산)
 - ※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 「행복e음」 급여 미생성 알림을 통해 해외체류 의심자가 확인된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2017년 4월부터 적용)

참고 | 해외체류 의심자 발생시 업무 처리 절차(2017년 4월부터 적용)



예시 | 해외체류 기간 처리방법

- 2016년 7월 2일 출국하여 2016년 10월 2일 입국함
 - 출국일 다음날인 2016년 7월 3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8월 31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9월에 지급정지한 후,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1월부터 급여 재개

예시 | 해외체류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체류 기간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사례) 2016. 7. 28일 출국 후 2016. 9. 1일 연금 신청하여 9. 30일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확인 및 「행복e음」 변동알림으로 통보
 - 해외체류기간 기산 : 출국일 다음날인 2016년 7월 29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날은 9월 26일임
 - 해외체류 60일이 경과되지 않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결정이전에 60일이 도래한 경우 신청한 달인 9월분은 지급하되, 60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에 해당하므로, 10월부터는 지급 정지함

③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 이해관계인 신고 또는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 확인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 (법원)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취소 신고증

(경찰서) 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182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 등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 중앙치매센터(www.nid.or.kr)활용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은 「행복e음」의 변동 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없이 처리 가능

④ 거주불명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1.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1) 신청 및 연금지급 결정 단계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신청하며(대리신청 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 지급
- 거주불명등록자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서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에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요청서(서식 17호)」를 송부



주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변경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 본인에게 기초연금 신청(변경신고)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신청서 등 자필 서명) 등을 유선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 신청(변경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변경신고)서 접수 불가
 - 본인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되, 거동불편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행정상 관리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가능하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방문 의뢰할 수 있음
- 신청(변경신고) 접수 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휴대전화 등), 친·인척 등의 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확보하여 상담내역에 기록
 -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는 구체적으로 기재

(2) 지급단계

-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 확인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와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확인하며, 친·인척 등 지인과의 통화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 현장 방문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의뢰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을 강구
-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희망)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거주불명 등록일, 거주불명 등록유형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



주의 확인 시 유의사항

-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애로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파악·조치

- (실제 거주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으로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서식 18호)」를 송부

- (지급기준) 추후 수급자의 소재 및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경우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을 다시 시작(소급지급하지 않음)

(3) 지급정지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해당 읍·면·동의 거주사실 확인과 실제 거주지 읍·면·동(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통보 내용에 의해서도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정지

| 구 분 | 1인 수급가구 | 2인 수급가구 |
|---------|---------------------------------------|--|
| 지급정지 기간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부 1인 수급 가구로 처리 |
| 지급기준 |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소급지급하지 않음) |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지급 (소급지급하지 않음) |

2. 연금 지급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정지
 -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수급을 위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을 다시 시작(소급지급하지 않음)
- 단,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지급

| 구 분 | 1인 수급 가구 | 2인 수급 가구 |
|---------|---|--|
| 지급정지 기간 |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 | 거주불명등록이 된 다음 달부터 부부 1인수급 가구로 처리 |
| 지급기준 |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 주민 등록 재등록한 다음달부터 지급) |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처리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 주민 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부부2인 수급 가구로 지급) |

(5) 처리방법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통지
-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e음」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소득·재산 변경사항 확인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라. 급여계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급여계좌의 변경
 - (지급반영시점) 본인신고(위임받은 대리신고 포함)에 의해 확인된 달부터 변경계좌로 지급(급여 확정일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

II.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 (법 제19조)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 처리 업무 흐름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행

| 단 계 | 업 무 처 리 내 용 |
|----------------------------|--|
| 제1단계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기타 관계인의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 원인 등 확인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 •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 내용 확인·결정 |
| ↓ | |
| 제2단계 납입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원인,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입고지 • 향후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 환수금과 상계처리 • 납부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
| ↓ | |
| 제3단계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 • 미납 시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 ↓ | |
| 제4단계 압류(촉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대상자의 재산·소득 등에 처분 금지 조치 실행 |
| ↓ | |
| 제5단계 공경매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 |
| ↓ | |
| 제6단계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대금에 대한 청산절차에 따라 환수금액 • 징수당해년도 급여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과년도 급여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



1.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의 개요

(1) 환수금의 범위

-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금 전액

(2) 환수대상의 확인 및 환수 결정기관

- 환수대상의 확인 및 환수 결정은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3)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일, 확인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처리 또는 정지하고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처리
- 환수대상이 확인되었으나, 수급자격은 유지되고 기초연금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확인일 등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액 변경 및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

2. 환수금의 결정

가. 환수대상자 결정

(1) 환수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수급권의 상실 등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자 등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소자, 실종자, 가출·행방불명자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등

- 수급권이 있지만 수급권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 전·출입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중복지급 받은 자
 - 단독 수급에서 부부 2인 수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부감액 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
 - 기타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 수급자를 대리하여 배우자(또는 부양의무자 등)가 신청하여 수급 중인 경우에도 그 연금 지급이 부당하여 환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연금 수급자 본인을 환수대상자로 함

(2) 환수대상자 결정 시점

- 본인신고 또는 기타 확인조사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초연금액 환수결정 등 환수절차 이행

(3) 환수대상자 관리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결정 즉시 환수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참고 | 환수징수 유형

- 보장비용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의 금액 환수 -> 이자가산 대상
- 반환명령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정지, 중지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대상의 환수금액

나. 환수금의 산정

(1) 환수 범위

-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또는 지급정지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 전부
 - 정당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 지급액에 대한 이자
 -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2) 이자 가산

- 이자 가산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이자의 계산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계산방법 :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에 산입한 후 이자액 계산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구 분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0% | 1.4% | 1.1%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부당이득 환수 시 가산할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매년 1월초 「행복e음」에 반영

(3) 끝수의 처리 (법 제24조)

-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버림)

(4)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등기우편 등의 행정비용(3천원)이 환수금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 제외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환수금도 징수하여야 함

예시 | 환수금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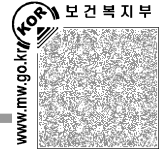
※ 이자의 계산은 「행복e음」에서 설정 시 자동 계산됨

- ◎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 8월 ~ 10월 사이 기초연금 20만원/월 수령
- ◎ 이자율 : 2014년도 연 2.4%, 2015년도 연 2.0%, 2016년도 연 1.4%, 2017년도 연 1.1%
- ◎ 총 지급액 : 600,000원(200,000원 × 3개월)
- ◎ 고지일자 : 2017. 4월
→ 기초연금을 부당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8월, 9월, 10월 각각)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17년 3월)까지의 이자액 가산

| | 이자 적용 기간 | 이자 계산식 | 산출 이자액* |
|-----------------------------------|--------------|-------------------------|----------------|
| 8월지급분 이자 ('14년 8월 ~ '16년 3월) | '14년 8- 12월 | 200,000원 × 0.024 × 5/12 | 2,000원 |
| | '15년 1- 7월 | 200,000원 × 0.020 × 7/12 | 2,330원 |
| | '15년 8- 12월 | 204,330원 × 0.020 × 5/12 | 1,700원 |
| | '16년 1- 7월 | 204,330원 × 0.014 × 7/12 | 1,660원 |
| | '16년 8- 12월 | 207,690원 × 0.014 × 5/12 | 1,210원 |
| | '17년 1- 3월 | 207,690원 × 0.011 × 3/12 | 570원 |
| 9월지급분 이자 ('14년 9월 ~ '16년 3월) | '14년 9- 12월 | 200,000원 × 0.024 × 4/12 | 1,600원 |
| | '15년 1- 8월 | 200,000원 × 0.020 × 8/12 | 2,660원 |
| | '15년 9- 12월 | 204,260원 × 0.020 × 4/12 | 1,360원 |
| | '16년 1- 8월 | 204,260원 × 0.014 × 8/12 | 1,900원 |
| | '16년 9- 12월 | 207,690원 × 0.014 × 4/12 | 960원 |
| | '17년 1- 3월 | 207,690원 × 0.011 × 3/12 | 570원 |
| 10월지급분 이자 ('14년 10월 ~ '16년 3월) | '14년 10- 12월 | 200,000원 × 0.024 × 3/12 | 1,200원 |
| | '15년 1- 9월 | 200,000원 × 0.020 × 9/12 | 3,000원 |
| | '15년 10- 12월 | 204,200원 × 0.020 × 3/12 | 1,020원 |
| | '16년 1- 9월 | 204,200원 × 0.014 × 9/12 | 2,140원 |
| | '16년 10- 12월 | 207,690원 × 0.014 × 3/12 | 720원 |
| | '17년 1- 3월 | 207,690원 × 0.011 × 3/12 | 570원 |
| 이자액 합계 | | | 27,170원 |

*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환수금액 : 2014년 8월~10월 지급한 기초연금액 600,000원 + 이자액 27,170원
= 환수 결정금액 627,170원



다. 납부 방법

(1) 전액 일시납부 원칙

- 납부방법은 전액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 납부방법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수급자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 선납 후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상계처리(기초연금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함
- 분할 납부 허용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환수대상금액(이자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횟수를 제한하나, 부득이한 경우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환수금액(이자 포함) | 분할 횟수 |
|---------------------|--------|
|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5회 이내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회 이내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회 이내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회 이내 |
| 300만원 이상 ~ | 36회 이내 |

- 분할 납부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음

(2) 상계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3. 환수금 징수절차 (법 제20조)

(1) 납부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처분 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환수 결정 및 등록
- 환수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고,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원인,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환수대상자가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연금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실제 이득을 취한 자.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됨

(2) 납부독촉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압류, 경매 등) 진행

(3) 징수금액의 처리

- 당해년도 급여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여입하고, 과년도 급여분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4. 소멸시효 (법 제23조)

-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중단사유 및 재기산일

| 중단사유 | 재기산일 | 비 고 |
|------------------------|------------|-----------------------------------|
| - 최초고지 및 (최초)독촉고지 | 납부기한의 다음날 |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은 최초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
| - 승인(일부납부, 총당, 납부각서 등) | 승인일의 다음날 | |
| -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 압류해제일의 다음날 | |

5. 결손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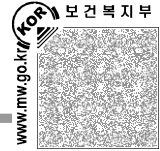
(1) 결손처분 대상(「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 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연금액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결손처분 전에 반드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참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2) 결손처분 방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체납된 환수금의 채권이 결손처분 기준에 해당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 및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환수금의 결손처분 심사 후 7일 이내에 「행복e음」에 반드시 심사결과를 입력·관리해야 함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제외함



Ⅲ. 부당수급자 관리

변동사항 미신고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 기초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함

과태료부과 업무 흐름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행

| 단 계 | 업 무 처 리 내 용 |
|--------------------------|---|
| 제1단계 위반행위 여부 확인·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정 |
| 제2단계 과태료부과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 명시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지정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p>※ 이의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 처분에 불복 시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제기 가능 2)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사실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
| 제3단계 압류(촉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대상자의 재산·소득 등에 처분 금지 조치 실행 |
| 제4단계 공경매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 |
| 제5단계 징수금액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과년도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 제6단계 종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

1. 과태료부과 (법 제31조)

(1) 위반행위 확인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2) 과태료 부과 결정

① 위반행위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 6 | 12 | 20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 | 6 | 12 | 2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 | 3 | 6 | 10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i)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i)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ii)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iv)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②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과태료 부과

③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④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명시

2. 벌칙 (법 제29조 및 제30조)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누설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IV.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수급자의 급여,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행복e음」을 활용하여 기록 관리·보고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등의 현황을 「행복e음」을 통해 기록·관리하며, 확인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에 입력 후 개인별 카드에 보관관리
- 기록관리 대상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서식 7호(을-4))³⁸⁾
 - 수급자 관리대장(서식 16호)³⁹⁾
 - 급여지급 실적

(2) 수급자의 현황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일일보고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수급자관리대장
 - 매월보고 : 급여지급실적
- 보고방법은 「행복e음」을 통해 보고

38) 통합관리카드 :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39) 수급자관리대장 : 관할 읍·면·동의 수급자 현황을 기재한 문서로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8편 국가부담금의 관리

I. 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I. 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법 제25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부담금 집행 및 관리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 국가부담비율 : 국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비용을 부담
- 지방비 분담비율: 국가부담비율을 뺀 비용은 시·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 분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규정

〈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2) 〉

① 산정기준

| 구분 | | 노인인구 비율 | | |
|-----------|----------------------------|-------------|----------------------------|-------------|
| | | 100분의 14 미만 |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 재정 자주도 | 100분의 90 이상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100분의 60 |
| |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100분의 50 | 100분의 60 | 100분의 70 |
| | 100분의 80 미만 | 100분의 70 | 100분의 80 | 100분의 90 |

②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지표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 $\text{① 산식}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자원}}{\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p>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p> <p>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 단, 세종특별시는 2012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2012년 7월부터의 평균치를 사용한다.</p> |
| 노인인구 비율 | $\text{①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수}}{\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 <p>② 전체 인구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p> <p>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p> |

●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기초지방자치단체 국가부담 비율 결정 및 국가부담금 시도 교부
- 시·도 : 보건복지부가 교부한 국가부담금과 조례로 정한 시·도 부담금을 합하여 시·군·구에 기초연금 예산 교부 및 정산
- 시·군·구 : 시·도에서 교부받은 국가부담금 및 시·도 부담금과 시·군·구 부담금을 합하여 기초연금 지급 및 정산

2. 부담금 집행 및 정산

● 집행범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및 미지급연금 급여 지급



- 거주지 변경시 기초연금 지급
 - 매월 15일 이전 전입 : 현 주소지(전입지) 시·군·구청장
 - 매월 16일 이후 전입 : 전 주소지(전출지) 시·군·구청장
- 정산
 - 시·도지사는 기초연금 예산 집행 이후 국가부담금을 정산하여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1/4분기까지 반납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9편 서 식



서식 목록

| | |
|---|-----|
| (서식 1호) <u>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u>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192 |
|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196 |
|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 197 |
| (서식 4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199 |
| (서식 5호) <u>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u>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 200 |
|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 208 |
|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 211 |
| (서식 8호) <u>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u>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223 |
| (서식 9호) <u>이의신청서</u>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224 |
| (서식 10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25 |
| (서식 11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226 |
| (서식 12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227 |
| (서식 13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229 |
| (서식 14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231 |
| (서식 15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233 |
| (서식 16호)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234 |
| (서식 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요청서 | 235 |
| (서식 18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 236 |
| (서식 19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237 |
| (서식 20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238 |
| (서식 21호) <u>사용대차확인서</u> | 239 |
| (서식 22호) 현장 조사서 | 240 |

서식1호-공통서식[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

[1 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 | | | | 처리기간 별도안내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 주소 | (실거주지 주소 ¹⁾ :) | | | 휴대전화 | | | |
| | | | | | 전자우편 | | | |
| 가족사항 | 세대주 외의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²⁾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 | | | | | | |
| 부양의무자 ³⁾ | 수급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가구원수 | 전화번호 | |
| | 의 | | | | | | | |
| | 의 | | | | | | | |
| | 의 | | | | | | | |
| 급여 계좌 | 신청인 과의 관계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비고(사유) ⁴⁾ | | |
| | | | | | | | | |
|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 가구에 한함)
- 2) 해당자에 한함
-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보장구분 | 사회보장급여 내용 | 확 인 체 (보) |
|--|--|-----------|
| 기초생활보장 |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⁵⁾ <input type="checkbox"/> 기타 ⁶⁾)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 |
| 영유아 |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시군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 |
| 아동·청소년 |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U+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 |
| 노인 |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 |
|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학비 | |
| 한부모 가족 |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축신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 |
| 기 타 |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업소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II)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⁷⁾ ()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
| < 유 의 사 항 > | | |
|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2.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대리 신청인) ⁸⁾ 성명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 |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임양대상), 보정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기숙사 등 거주자,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직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 안 내 사 항 > | | |
|---|--|--|
| 처 리 기 한 | - 14일 :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 70일 이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
| 관 계 법 률 | 보장구분 | 해당 법률 |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
|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
| | 아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 | 노인 | 기초연금법 |
| |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 기타 |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 |
| 신청시 구비서류 | | 추가제출서류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⁹⁾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II) 신청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II))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4 면]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 | | | |
|-------------------------|--|-----|-----------------------|-----------------|--|
| 자 격 구 분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 | | | |
|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 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 | | | 휴대전화 |
| 감면 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할인 (고객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사용계약자명: _____ 도시가스사업자명: _____ 고객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비 (열사용자번호 : _____) | | | | |
| 가구원 추가 기재(휴대전화요금할인 신청시) | | | | | |
| 가 족 사 항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휴대전화 번호 | 이동통신사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유 의 사 항 |
|---|
|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
| 2.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3.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7.1>

| 소득·재산 신고서 [<input type="checkbox"/>신규 <input type="checkbox"/>변경] | | | | | | | |
|--|--|--|--------------|---|---|--------------------|---|
|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가구원 성명 ¹⁾ | | | | | | | |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일용근로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임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어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기타(자영업)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이자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연금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
| 기타 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input type="checkbox"/> 무료임대)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공적이전소득 ²⁾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재산 사항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선박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항공기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자동차 |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 | | | | 원 |
| | 임차보증금 |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 | | | | 원 |
| | 금융재산 | | | | | | 원 |
| | 동산 | <input type="checkbox"/> 소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 분양권 | | | | 원 |
| | | | 조합원 입주권 | | | | 원 |
| | | | 회원권 | | | | 원 |
|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소계 (A-(B+C+D))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C) 부채 상환액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 | | | | 원 |
| 부 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원 |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 | 원 | |
| | 임대보증금 | | | | | | 원 |
| | 개인간 부채 |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 | | | | 원 |
|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 | | | | 원 | |
|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신청인(대리신청인): | | |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 | | | | |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1.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중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 | |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유의 사항 |
|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4호] <개정 2015.1.1.>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 | | | |
|--|---|--|-------|------------|--|
| 동의자 (본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사무실) | |
| | | | | 휴대전화 | |
| 동의자 (배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사무실) | |
| | | | | 휴대전화 | |
| <p>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 : (서명 또는 인)</p> | | | | | |
| 기 재 요 령 | <input type="checkbox"/>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 | | | |
| 유 의 사 항 | <input type="checkbox"/>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 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회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결정(적합) <input type="checkbox"/> 결정(부적합)]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자·중지·상실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명 |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휴대전화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급여·서비스내용 | | |
| 비고 | | | | | | | |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구분 | 보장급여 | 급여개시일 |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 | | | | | | |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이상 월차임 연체 등 | | | | | | | |
|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 | | | | | |
|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임원중인 경우 등 | | | | | | | |
|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 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신청인과의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구분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동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종일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맞춤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보호자 |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
| 지원기관 | 기관명 | | | 대표자 | | |
| | 주소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지원내용 | | | | | | |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기초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본인 | | 원 | | |
| 배우자 | | 원 | | |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 지원대상 | | 사회서비스명 | 정부지원액 (월) | 본인부담금 (월) |
|-----------|------|----------|--------------|--------------|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 이용권 유효기간 | 지원내역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 활동지원등급 | 등급 | 인정점수 | 점 |
|-------------|---------------------------------------|----------------------|---|
|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긴급활동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
| 월 한도액 | 월 원 |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 |
| 본인부담금 | 월 원 |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 |
|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 | | |
| 급여개시일 | | | |
| 유효기간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견 | | | |

-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3.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 포함)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결정된 정부 지원액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출 항 목 | 금 액(원) |
|------------|--------|
| 합 계 | |
| 학 자 금 | |
| 전 기 료 | |
| 건강보험료 | |
| 정보·통신비 | |
| 기 타 | |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서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서비스유형 | 지원유형 | 보장기간/지원기간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유형 | 급여개시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차상위 계층 | 생년월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 | |
|---|---------------|
| 비 고 |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 <p>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p> <p>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p> <p>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p> <p>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p> <p>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p> <p>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p>년 월 일</p> | |
| <p>담 당 자 : 직급 성명</p> <p>문의 전화번호</p> | |
|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p> | |
| <p>직인</p>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6호-공통서식[별지제7호서식 <개정2015.7.1.>

[1면]

| 접수번호 |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신청인 (보호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위의 관계 | | 주소 | | | | | | | | | | | |
| 보장 신청 |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이특비 <input type="checkbox"/> 아동장 소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 | | | | | | | | | | | | | | |
| 구분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이동거 사유) | 건강상태 (장애, 질병) | 근로능력 유무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 학년) | 자격종 (종 학) | 복지급여개좌 (금종, 단명) | 직업출연 | | | 취업상 태 | | | 보장상태 | |
| | | | | | | | | | | 구분 | 직종 | 직업 | 고용형태 | 직장명 | 잔여비호 | 의료보장 | 보장결정 |
| 기구원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부양의무자 | 수급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구원수 | 직업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 월평균 지인금 | 부양능력 판정 사유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회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회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 부양능력자 유무 | | 부양능력자 유무 | | 부양능력자 유무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kg/m²(제활용종))



[2면]

| 수 | 성명 | 사업소득 | | | | 채산소득 | | | | 기타소득 | | | |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근로소득 | 농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이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 | 사적이전 | 부양비 | | |
| 구분 | 성명 | 간혹물 | 토지 | 선박/항공기 | 어업권/임목재산 | 자동차 | 임대보증금 | 금융재산 | 회원권 등 | 등산 | | | | |
| 구분 | 성명 | 건물(m ² , 천원) [건물(m ² , 천원) [주택(m ² , 천원) [서설물(m ² , 천원) [기타(m ² , 천원) | m ² , 천원) m ² , 천원) m ² , 천원) m ² , 천원) m ² , 천원) | 신박(대 천원) [항공기 대 천원) | 어업권/임목재산 [어업권 천원) [임목재산 천원) | 경기액(천원) [차종연세() [차량번호() [배기량 cc) [용도() | 전월세보증금(천원) [상가보증금(천원) [기타(천원) | 여금적금(천원) [보통(천원) [주택(천원) [현금수표어음등(천원) | 회원권(천원) [보통회원권(천원) [특별회원권(천원) [기타(천원) | 기차(마리 천원) [종모임금() [기타(천원) [기타(천원) | | | | |
| 구분 | 성명 | 기초공 제한 | | | | | | | | | | | | |
| 구분 | 성명 | 가구특상별 급여지출 | 장애인 | 근로사업소득 학생 | 자활공동체 | 재산 운용 | 장기저축 | 생활준비금 | 추가기본 공제 | 경로연금부채 (저소득노인) | | | | |
| 구분 | 성명 | 금융기관대출금 | 천원 | 금융기관의 기관 대출금 | 천원 | 임대보증금 |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소정조서에 의한 시채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용지))

[3면]

| | | | | | | | | | | | | | | |
|----------------|----------------|--|--|--|--|---|--|--|------|------------------|-----------|-----------|-------------|--|
| 주거실태 | 주거유형 | <input type="checkbox"/> 자가(전원) <input type="checkbox"/> 임대(무허가주택, 소유권(임대)장 등(제자) <input type="checkbox"/> 전세(무임차(전세)사용(대차) <input type="checkbox"/> 부분무임차(부분사용(대차) <input type="checkbox"/> 기타(자기인정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월세(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전원, 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input type="checkbox"/> 원) | | | | | | | | | | | | |
| | 건축상태 |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모정기관 제공주거 <input type="checkbox"/> 그룹홈 <input type="checkbox"/> 기타(음막, 비닐하우스 등) | | | | | | | | | | | | |
| 기주요구 | 건축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 축 <input type="checkbox"/> 긴급보수 <input type="checkbox"/> 편의도모보수 <input type="checkbox"/> 도배 등 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 |
| | 주거급여판정 |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합금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차감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인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 | | | | | | | | | | | |
| 보장결정 | 기주요구 |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 | | | | | | | | | | | |
| | 보장구분 |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직업 | | | | | | | | | | | | |
| 보장사유 | 보장구분 |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 | | | | | | | | | | | |
| | 소득 | 소득액 | 공제액 | 소득평가액 | 재산총액 | 재산총액 | 인정부채액 | 공제액 | 순자산액 | 환산대상 순자산 액 | 소득환산 액 | 소득인정 액 | 보장가구 원 수 | 보장결정 의견 |
| 기초생활보장 대상사유 | 기초생활보장 대상사유 | 원 | 원 | 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원 | 원 | 명 | 직 합 부적합 |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초과 <input type="checkbox"/> 소득초과 <input type="checkbox"/> 재산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기초생활보장 대상사유 | <input type="checkbox"/> 연신(18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연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근병호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보육료(0~4세)유아교육비(3~4세) <input type="checkbox"/> 민생에이 보육유아교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아동보육 <input type="checkbox"/> 병과 후 보육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 양육수당 |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건강지원 <input type="checkbox"/> 학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원() | <input type="checkbox"/> 부모시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모망가출 <input type="checkbox"/> 부시망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폐질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부모노령 <input type="checkbox"/> 부모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유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생산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해외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부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유전성, 악물중독, 출산시 의료사고, 원인불명, 기타 <input type="checkbox"/> 후천성: 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 사고, 음향의상성난청, 미상, 기타 |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제활·용종))

| 년도/분기 | | 세대주 | | | | 주 소 변 동 사 항 | | | | 세대주 | |
|---------------------|------------------------------|-----------------------|--------------|--------------|------------------------|----------------|-------------|-------|------------------|-----|--|
| 세대주 및 주소변동사 항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주 소 | 전화번호 | 진화번호 | | 진입일자 | | |
| |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가구원별 지열번호 | 가구원별 보장구분 | 가구원별 보장금액 (금융기관) | 소득합계 | 자 산 | | | | |
| 보장 가구 | 본인 | | | | 개인별소득 | 소득합계 | 채 산 | | | | |
| | | | | | 잔가구원 소득액 | 잔가구원 소득액 | 장기저축 | 재신용액 | | | |
| | | | | | 소득공제액 | 소득공제액 | 생활준비금 | 공제총액 | | | |
| | | | | | 잔가구원 소득평가액 | 잔가구원 소득평가액 | 추가기초공제 | 기초공제액 | | | |
| 보장구분사항 | | | | |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 금융채산 | 소득환산액 | | | |
| | | | | | | | 등 신 회원권등 | 소득인정액 | | | |
| 내 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차상지원, 부량인) |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 이동청소년 | | 한부모가족 |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 |
| | 개시일 | | | | | | | | 노인복지 (기초연금) | | |
| 보장 기간 | 중지일 | | | | | | | | | | |
| | 정지일 | | | | | | | | | | |
| 보장유형(등급) | 상원일 | | | | | | | | | | |
| | 보장유형(등급) | | | | | | | | | | |
| 보장구분일수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kg/m²(제철·용문))



(갑-2)

| 관리번호 | | | 세대주 | | | | | | | | | | | | | | | | | |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직성일자 :) | | 작성자 조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기초생활 보장사유 | <input type="checkbox"/> 연소(18세미만) <input type="checkbox"/> 연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병명:)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등급:)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기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명), 부양능력 미약(명), 부양능력 있음(명) |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부모(25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 | | | | | | | | | | | | | | | | | | |
| 부양의무자 | <input type="checkbox"/>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input type="checkbox"/>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특례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특례유형() <input type="checkbox"/> 특례수급제가구전체, 가구원 일부 ()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개시일()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근로능력판정 | | 판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긴급급여 | <input type="checkbox"/>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급여일시() <input type="checkbox"/> 급여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생계급여 |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급여 |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현금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지급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인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급여 | <table border="1"> <tr> <th>성 명</th> <th>학 교 명</th> <th>학 년 반</th> <th>성 명</th> <th>학 교 명</th> <th>학 년 반</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성 명 | 학 교 명 | 학 년 반 | 성 명 | 학 교 명 | 학 년 반 | | | | | | | | | | | | | | |
| 성 명 | 학 교 명 | 학 년 반 | 성 명 | 학 교 명 | 학 년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산급여 | <input type="checkbox"/> 해산자 () <input type="checkbox"/> 해산일자 () 장 제 급여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감면제도 | <input type="checkbox"/> 복지 진 화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사유:) 시정료감면고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요금 <table border="1"> <tr> <td>쓰레기종량제봉투</td> <td>기 타</td> </tr> </table> | 쓰레기종량제봉투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쓰레기종량제봉투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김-3)

| 관리번호 | | 세대주 | | | | | |
|-----------------|----------|------|------|----------------|--------|------|------------|
| 지활지원 대상자 | | | | | | | |
| 조건부수급자 구분 | | | | | | | |
| 성명 | 지활역량평가점수 | 지활방향 | 근로여부 | 가구특성 | 유형 | 지활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활사업 | | | | 조건 이행여부 | | | |
| 성명 | 내용 | 의뢰기관 | 사업명 | 참여기간 | 급여(임금) | 이행여부 | 급여중지일(제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지활용품))

(갑-4)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세대주 | | | | | | | | | |
| 영유아보육유이특비 대상자 (작성일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보육료 ·유이특비 감면아동 | 성명 | 보육시설유치원명 | 시설전화번호 | 이용기간 | 성명 | 보육시설유치원명 | 시설전화번호 |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이동금식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비고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소년소녀 가정 | 사유 |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모방 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가출 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폐질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부모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성명 | 육구 및 문제 | 보호 방향 | | 시 설 입 소 | | | | | |
| | | | 시설명 | 소재지 | 입소일자 | 입소기간 | | | | |
| 청소년특별지원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성명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용))



(길-5)

| | | |
|--|--|---|
| 관리번호 | 세대주 | |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한부모가족사유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학부지원 | 성명 | □ 청소년보호(28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
| 이동양육비지원 | 성명 | □ 장년반 □ 청소년반 □ 학년반 |
| 시설입소 (이용)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의료비부담액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자립촉진수당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성명 | □ 보호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의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불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종))

(을-1)

| | | | | | |
|---|---|---|---|--------|---|
| 관리번호 | | | 세대주 | | |
|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장애인 성명 | 복지요구 <input type="checkbox"/> 보장구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이동수단 | 복지요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여 <input type="checkbox"/> 사생임소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서비스 | | | |
| 장애등록사항 | 종합장애등급 | 심사원료여부 | 최초장애등록일 | 중복장애유무 | |
| | 주 장 애 | | 부 장 애 | | |
| | 진단이력 | 유형 | 등급 | 유형 | 등급 |
| | 진단이력 | 심사원료여부 | 결정일자 | 장애판정기관 | 장애판정기관 |
| 장애사유 | 주 장 애 <input type="checkbox"/> 신전성 () <input type="checkbox"/> 후천성 () | 발병연령 | 부 장 애 <input type="checkbox"/> 신전성 () <input type="checkbox"/> 후천성 () | 발병연령 | |
| 구원지 | 보장구 | 종 류 | 교부일자 | 기간 | |
| | 취업알선 | 직 종 | 기 관 | 기관명 | 기간 |
| | 학 비 | 대상자 | 학교명 | 의료급여종별 |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
| | 장애수당 | 대상자 | 지급개시일자 | 지급개시일자 | |
| 장애인연금 | 대상자 | 대상자 | | | |
| 시생임소(이 용) | 대상자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이용)일자 |
| | 입소(이용)기간 | | | | |
| 자동차 지 | 발급일 | 차종 | 배기량 | 차량번호 | 배기량 |
| | 보행상 장애유무 | 차종 | 배기량 | 차량번호 | 소유자 |
| | | | | | 반납일자 |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용))



(을-2)

| 관리번호 | 세대주 | | | | | | | | | |
|-----------|-----------|---|-------|------|--------|--------------|----|---|--|--|
|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작성일자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지급개시일 | 지급정지 | | 자격상실 | | 수급사항 | | |
| 장애인연금 | | | | 일 자 | 사유 | 일 자 | 사유 | 혜당구분 | 지급액 구분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단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부부 1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부부 2인 | <input type="checkbox"/> 기초급여 <input type="checkbox"/> 추가급여 | <input type="checkbox"/> 잔액 <input type="checkbox"/> 감액(원) |
| 이력 | 개인현황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사유 | | | <input type="checkbox"/> 수급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상실 <input type="checkbox"/> 부당이득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범용내역 | | | | 이의신청 | | 결과 | <input type="checkbox"/> 인용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이력 | 연금액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금액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증가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 60일 <input type="checkbox"/> 재산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변동사유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환수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환수완료 <input type="checkbox"/> 환수중 <input type="checkbox"/> 미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연금액내역 | 연금액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금액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60,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12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변동사유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과태료 부과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거짓 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조사질문 거부 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소멸 발생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4)

| | | | | | | |
|----------|----------------------|----------------------|-------------------------------|-----------|---|--|
| 관리번호 | 세대주 | | | | | |
| 기초연금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대상자 | 작성일자 : (작성일자 :) | | 작성일자 직명 | 성명 | 수급사항 |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 지급개시일 | | | |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
| 이력 | 변동 내역 |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이의신청 | 사유 | |
| | | 소득·재산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결과 | □ 미해당 □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 연금 내역 | 기초연금 급여액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부당이득 | 사유 | □ 사망 □ 소득재산 증가 □ 해외체류 60일 □ 재산자 □ 기타 |
| | | 변동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과태료 부과 | 사유 |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기타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자료 제출 □ 조사질문 거부명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기타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9편 서식



(을-5)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세대주 | | | | | | | | | |
| 노숙인 복지 대상자 | |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부령인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복지요구 |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입소일자 | 입소기간 |
| | 시설입소 대상자 | 시설명 | 소재지 |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 | | 후원용도 | | 소년소녀 기장 | | |
| 후원자 | | 후원방법 (정기, 일시) | | 후원기간 | | 후원금액 및 후원내용 | |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 | 소년소녀 기장 | |
| 후원 현황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 지원 대상 현황 | | 지원봉사자 | | 지원봉사기간 | | 지원봉사내용 | | 지원봉사대상자 | | 비고 | |
| 신뢰기관명 | | 신뢰기관명 | | 신뢰기관명 | | 신뢰기관명 | | 신뢰기관명 | | 신뢰기관명 |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주 소/전 화 번 호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개월용종))

(별-1) (관리번호 : 세대주 :)

| 상 담 내 용 | | | | | | | | | | 성 명 | 주 요 변 동 사 항 | |
|----------|----------|---------|---------|---|-------|-----|-----|-----------|--|-------------|-------------|--|
| 1차 상담 | 구분 | 모 장 대상자 | | | | | | | | 성 명 | | |
| | | 부 양 의무자 | | | | | | | | | | |
| | | 소 탁 | | | | | | | | | | |
| | 상 담 인 자 | 년 | 월 | 일 | 상 담 자 | 직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주 요 변 동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상담 | 구분 | 모 장 대상자 | | | | | | | | 성 명 | |
| | | | 부 양 의무자 | | | | | | | | | |
| | | | 소 탁 | | | | | | | | | |
| 상 담 인 자 | | 년 | 월 | 일 | 상 담 자 | 직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주 요 변 동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기원용종))

제9편 서 식



(별-2)

| 상 담 내 용 | | | | | | | | | | 주 요 번 통 사 령 | |
|---------|--|--|--|--|--|--|--|--|--|-------------|-------------|
| | | | | | | | | | | 상 명 | |
| | | | | | | | | | | 구 분 | |
| | | | | | | | | | | 보 장 대상자 | |
| | | | | | | | | | | 부 양 의무자 | |
| | | | | | | | | | | 수 득 | |
| | | | | | | | | | | 제 산 | |
| | | | | | | | | | | 구 분 | 주 요 번 통 사 령 |
| | | | | | | | | | | 보 장 대상자 | |
| | | | | | | | | | | 부 양 의무자 | |
| | | | | | | | | | | 수 득 | |
| | | | | | | | | | | 제 산 | |

3차 상담

4차 상담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부))

서식8호-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1.1 >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 | | | |
|---|--|-----------------------------|--------------------------------|--------------------------------|
| 수급자 (보호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 년 월 일 | | | |
| | 거주지 (소재지) | | | |
|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 년 월 일 | | | |
| | 주 소 | | | |
| | 수급자·보호대상 자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본인 |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 | | | |
| 환수(반환) 사 유 | | | | |
| 납부액 | 원 | 납부장소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첨 | |
|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p> | | | | |
| 안내 | <p>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p> <p>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사·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p> <p>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p> <p>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9호-공통서식[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1.1 >

| 이 의 신 청 서 | | | 처리기간 별도안내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대리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신청인과 의 관계 |
| | 주소 | | |
| 처분내용 | |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 년 월 일 |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 년 월 일 | |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 | |
| 안내 | <p>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각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p> <p>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p> <p>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p> | | |
| 구비서류 | <p>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10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연금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주택) |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주택) |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 내 용 |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 | |

| | | | |
|--------------|----------|------|------|
| 대리인 (수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주택) | 휴대전화 | 관계 |
| | 주소 | | |

위임자(본인)는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위임자(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위임자(본인 및 배우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11호-[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 배우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입니다.
-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2호-[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지 급 대상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 신청사유 |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 | 대리수령기간 | . 월부터 . 월까지(월간) |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 | | | |
|------------|------------|--------------------|------|
| 법 정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대 리 수령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연금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자르는 선

제 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승인서

| | | | |
|---------------------|------|-------------------------------|--|
| 지 급 대상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신청사유 |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 |
| 대 리 수령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관계 | |

위와 같이 기초연금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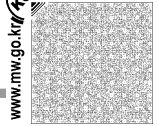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신 청 | 신청결과 통지 | 접 수 |
| | | 확 인 |
| | | 결 재 |

유 의 사 항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13호-[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7일 | |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인정기준 지급순위 [] 배우자 : 1순위 [] 자녀(배우자 포함) : 2순위 [] 부모 : 3순위 [] 손자녀(배우자 포함) : 4순위 | | 동순위자 ()명 | |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
| 미지급 기초연금 내역 | 사망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주택) | | 휴대전화 | | |
| | 주소 | | | | |
| | 사망일 | 청구액 | 미지급 기간 ()개월 []년 []월 ~ []년 []월 | | |
| 동순위 수급권자 |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선정 | |
| | | | | 선정일자 | 서명 또는 인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 |
| | 주소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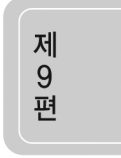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제출서류 |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3. 동순위자 : () 4. 기타 : |

24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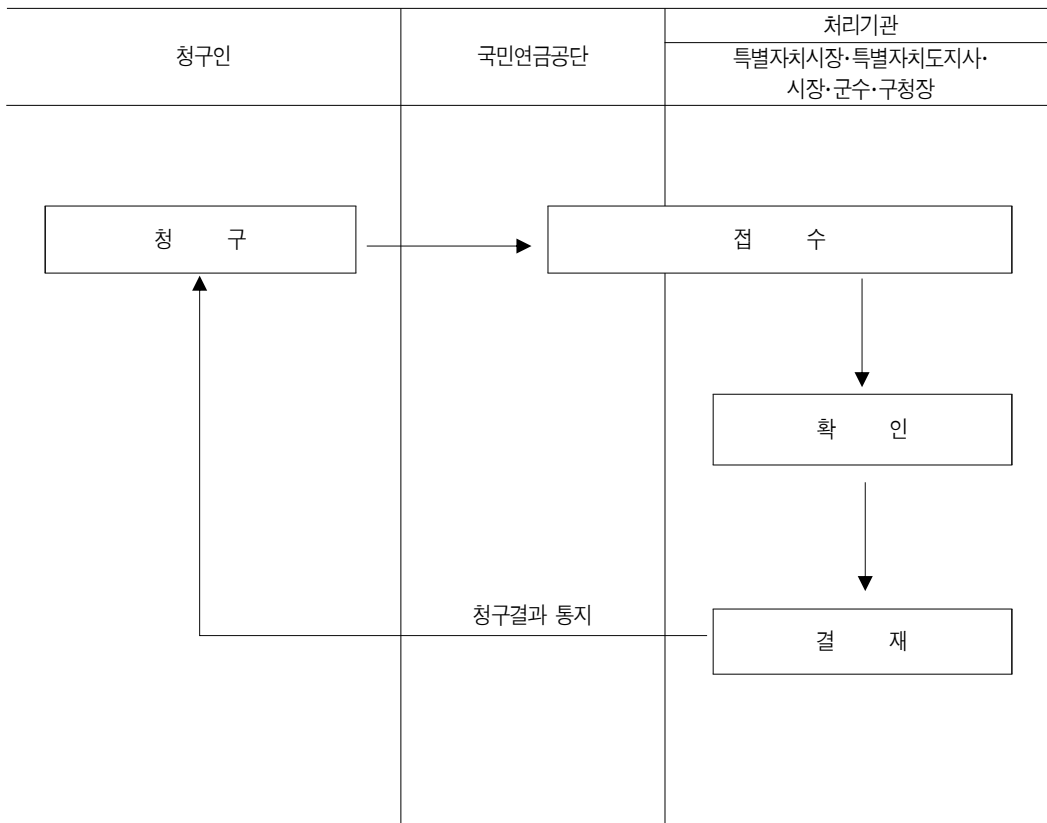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 의무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입니다.
4. 지급순위가 2명 이상 동순위일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하실 분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 선정"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4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4호-[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수급자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주택) |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 수급권 상실사유 | [] 사망 | | 상실사유 발생일 |
| | [] 국적상실 | | |
| | [] 국외이주 | | |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 |
| | []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 | |

* 아래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 | |
|--------------------|------|--------|----|
|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 | 주소 | | |

「기초연금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수수료 없음 |
|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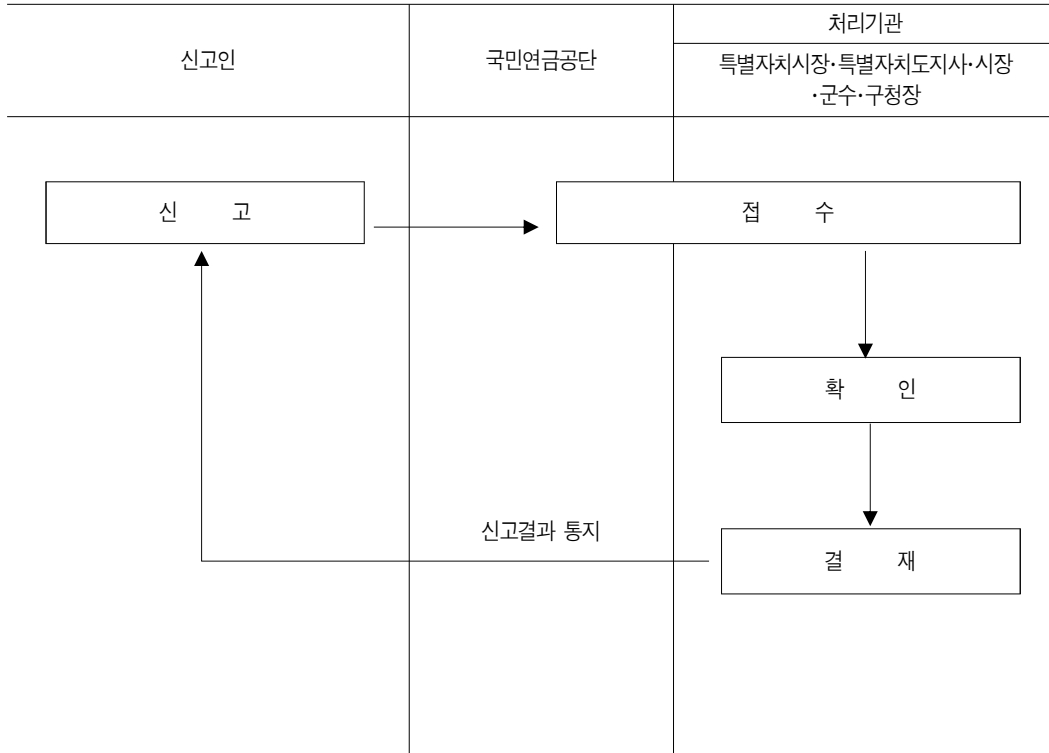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4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5호-[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주택) |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 이의 신청일 | | | |
| 처 분 내 용 | | | |
| 이의신청 내용 |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액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input type="checkbox"/> 처분 취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 | |
| 이의신청 결정 사유 | | | |

- 귀하의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
| 참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16호-[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시·군·구 |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월 |
| 수급자 현황 | 명 | 성·연령별 수급자 현황 | 수급자변동현황 | | | | 예산집행현황 | | 비고 | | |
| | | | 전월대비 증감율 | 연령 | 남 | 여 | 계 | 신규 | | 국비 | |
| 노인 단독 | | 65~69세 | | | | | 신규 | | 국비 | | |
| | | 70~74세 | | | | | 정지 | | 시·도비 | | |
| | | 75~79세 | | | | | 상실 | | 시·군·구비 | | |
| 노인 부부 | 1인 수급 | 80세 이상 | | | | | 전입 | | 합계 | | |
| | 2인 수급 | 계 | | | | | 전출 | | 집행율 (%) | | |
| 수급자 명단 | | | | | | | | | | | |
| 일련 번호 | 수급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읍·면·동 | 소득 인정액 | 지 급 내 역 | | | | | | |
| | | | | | 최초 지급일 | 지급액 | 감액사유 | 지급내역 변동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수신 : 000 읍·면·동 주민센터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00지사장
 제목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

|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행정상 관리주소 | 연락처 | 집 (사무실) | |
| | | 실제 거주지 | | H·P | |
| ※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 ※ 실제 거주지 : 신청 접수시 상담내역에 의거 실제 거주지 읍·면·동 관내의 구체적인 거주지역을 적시하여 기재 위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호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서 「기초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00시·군·구(00읍·면·동)의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향후 급여 지급 등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오니, 매월 15일까지 귀 읍·면·동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근거: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하신 후, 그 결과를 아래 FAX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담당자(공무원) : 직급 | | 성명 | | | |
| 연락처 : | | | | | |
| FAX : | | | | | |
| | | | | 년 월 일 | |
| 000 읍·면·동 주민센터장 | | (인)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8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수신 : 000 읍·면·동 주민센터장

제목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

|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 주소 | 행정상 관리주소 | | 집 (사무실) | |
| | | 실제거주지 | | H·P | |
| | |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 | | |
| 기타 생활상태 | | | | | |
| <p>※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p> <p>※ 실제 거주지 : 수급자로 결정(변경신고)된 후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에서 통보한 실제 거주지 기재</p> <p>※ 실제 거주지 거주여부 : 실제 거주지에 수급자 본인의 거주여부를 파악하여 ○, ×로 표시하고,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기재</p> <p>※ 기타 생활상태 : 친·인척 왕래, 기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재</p> <p>※ 유의사항 :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거주사실 등 파악시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조심성 있게 접근하여 진행(오해할 만한 불필요한 질문 삼가)</p> <p>「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거주사실 파악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거주확인기관 : 000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00지사 확인자(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 ○ ○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000 읍·면·동 주민센터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00지사장 (인)</p>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0호]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 |
|--|--------|--|
| 신청자 (수급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배우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p>본인은 배우자 _____와 _____년부터 _____년째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혼인,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관계이며, 추후 「기초연 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징수 및 모 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수급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p> | | |
| <p>상기와 같이 사실상 혼인(이혼) 관계임을 확인합니다.</p> <p>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관 계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연락처 : _____ 주 소 : _____</p> <p>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관 계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연락처 : _____ 주 소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21호]

| 사용대차 확인서 | | | | |
|---|------------------|--|------|--|
| 사용인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임대인과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 |
| |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 | |
| 사용내용 | 사용현황 |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
| | 임대기간 | 20 ~ 20 까지 | | |
| |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일부 보조 <input type="checkbox"/> 육아 · 가사노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 |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
|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m(재활용품)]

[서식22호]

| 현장 조사서 | | | | |
|---|----|--|----------|----|
| 대상자 | | | | |
| 조사목적 | | | | |
| 조사기간 | | | | |
| 조사 담당자 | 소속 | | 직급 또는 직위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 | | |
| 제출자료 | | | | |
| 법적 근거 | | | | |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 | |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담당자 : 직급 성명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문의 연락처 : (전화 : , e-mail :) </div>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직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10편 부 록

-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III.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IV.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1. 목적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국민연금 급여 종류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음

| 종 류 | 내 용 |
|-------|--|
| 노령연금 |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수급연령('13년 기준 61세) 도달 시 지급 |
| 장애연금 |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 (단,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
| 반환일시금 |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한 경우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한꺼번에 지급 |
| 사망일시금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 |

3. 국민연금액 산정

$$\text{연금액(年)} = \text{기본연금액}(\times \text{급여종류별 지급률}) + \text{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17년 45.5%),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16년 2,176,483원), 본인의 평균소득, 가입년수로 결정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균등부분(A값), 소득비례부분(B값),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

$$\text{기본연금액(年)} = 1.365(A+B)(1+0.05N)$$

- 1.365(비례상수) : 소득대체율* 45.5%(17년)를 의미하는 비례상수, 매년 0.5%p(비례상수 0.015)씩 인하되어 '28년 이후 40%(비례상수 1.2)
* 40년 가입기준으로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 비율
- A값(균등부분)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치 평균액
- B값(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에 따른 경제적 추가수요를 보충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 생계를 위해 마련된 부가급여임
* '16년 4월~'17년 3월 배우자 : 연 249,600원, 자녀 부모 : 연 166,360원
'17년 4월~'18년 3월 배우자 : 연 252,090원, 자녀 부모 : 연 168,020원

4. 물가 연동

-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에 반영하여 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존
* ('10) 2.8% → ('11) 2.9% → ('12) 4.0% → ('13) 2.2% → ('14) 1.3% → ('15년) 1.3% → ('16년) 1.0%

5. 국민연금 수급 연령

- '98년 연금개혁 결과, 연금 수급연령을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15년 현재 61세)하여 '33년에는 65세 도달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 출생연도 | ~'52년 | '53~'56년 | '57년~'60년 | '61년~'64년 | '65년~'68년 | '69년~ |
|------|-------|----------|-----------|-----------|-----------|-------|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6. 국민연금 급여의 요건 및 수준

| 급여종류 | 수 급 요 건 | 급 여 수 준 | |
|------|---|---|---|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세 도달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 20년미만(이상) 가입시 5%씩 감액(증액) |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세~65세 - 소득이 있는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따라 지급률 적용 - 61세(50%), 62세(60%), 63세(70%), 64세(80%), 65세(90%) |
| | 조기노령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세~60세 - 소득이 없는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로 1세당 6% 감액 지급 - 56세(70%), 57세(76%), 58세(82%), 59세(88%), 60세(94%) |
| | 특례노령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도달 -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특례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 20년 기준, 1년에 5%씩 감액 |
| | 분할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60세 도달한 때 또는 60세 이후 이혼한 때 (5년이상 혼인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 |
| 장애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 |
| 유족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
| 일시금 | 반환일시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61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 희망 시 60세 청구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보험료에 일정이자 가산 |
| | 사망일시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범위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자 ● 반환일시금 상당액 (최종 or 평균기준소득액의 4배이내) |

7.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 개요

-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임

■ 중복급여의 조정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급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인에게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2개 이상 급여가 발생하거나(예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두 사람 이상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2개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예 :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자녀의 사망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적용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이 아님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 '장애의 중복조정'에 따름
- 분할연금
 - 분할연금과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과는 중복급여 조정대상임
 -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분할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아님
 - 2개이상의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수급권으로 보고 중복급여 조정함

■ 중복급여조정에 따른 급여지급

- (1) 원칙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
- (2) 예외 : 중복급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
 - 다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반환일시금만 지급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함
 -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때에는 장애연금만 지급함

| 선발급여 | 후발급여 | | 지급할 급여 |
|----------------|----------|------|----------------------------------|
| 노령연금 (분할연금) | 분할연금 | | 노령(분할)연금 + 분할연금 |
| | 장애연금 | | 선택한 하나의 급여 |
| | 유족연금 | |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
| | 반환일시금 | | 노령(분할)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
| 장애연금 | 노령(분할)연금 | | 선택한 하나의 급여 |
| | 유족연금 | | 장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
| | 반환일시금 | 본인기여 | 선택한 하나의 급여 |
| | | 가족기여 | 장애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
| 유족연금 | 노령(분할)연금 | |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
| | 장애연금 | | 장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
| | 유족연금 | | 선택한 유족연금 +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 |
| | 반환일시금 |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연계방식

-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각 개별연금 제도에 기초하여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

■ 적용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인 자로, '09.8월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자에 한해 적용

* 다만, '07.7.23.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법 시행전까지 이동한 경우 예외 적용

■ 연계급여 종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계노령연금, 직역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계 직연금을 지급

- 수급자 사망 시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 연계급여 지급시기

- 만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 출생연도 | ~'52년 | '53~'56년 | '57년~'60년 | '61년~'64년 | '65년~'68년 | '69년~ |
|------|-------|----------|-----------|-----------|-----------|-------|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국민연금(2013년 61세,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예정), 공무원·사학연금·별정우체국[60세 또는 정년 도달 시, 2010년(별정우체국은 2011년) 가입자부터는 65세], 군인연금(퇴역 시)

Ⅲ.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연금 업무의 위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3. “공단지사”란 제2호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초연금의 위탁업무에 관하여는 기초연금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침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지침 내용의 신설·변경·폐지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침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수탁자는 이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 범위) ①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신청 등의 접수

- 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 다.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안내 및 기초연금 제도 홍보
 - 나.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다.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3. 법 제11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사
- 가.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이혼관계 여부
 - 나. 사망의심자의 사망 여부
 - 다. 거주불명등록자 확인조사
 - 라. 타인계좌입금수급자 등의 대리수령 필요성 및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 마. 배우자의 부재(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 여부
 - 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허가 신청 여부
 - 사.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에 대한 휴·폐업 법인의 사업재개 여부
 - 아. 그 밖에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4.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사업
 - 나.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등 정책 지원
-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1항의 위탁업무 범위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업무 수행)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상호협력)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지사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특별자치시, 시·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은 특별자치시, 시·군·구를 통해 공단지사와 협력한다.

제9조(개인정보 제공·관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6조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6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초연금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조사) ① 수탁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책임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자의 실명을 기재한 조사 결과를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계획 수립, 위탁업무 처리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탁자는 지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 수탁자는 매 반기마다 사업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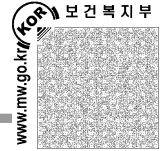
제13조(성과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외사항) 위탁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IV.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2017. 1. 4. 현재)

| 시도 | 지사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 주 소 |
|----|--------------|-------------------------------|--------------|---------------------------------|--|
| 서울 | 종로중구 | 중구, 종로구 | 02-397-9540 | 02-397-9510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 | 동대문중앙 | 동대문구, 중랑구 | 02-920-0547 | 02-920-0502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6층 경영빌딩 (신설동) |
| | 성북강북 | 성북구, 강북구 | 02-901-2821 | 02-901-2823 |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6-7층 삼성화재빌딩 (번동) |
| | 도봉노원 | 도봉구, 노원구 | 02-2211-2846 | 02-2211-2846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상계동) |
| | 성동광진 | 성동구, 광진구 | 02-3408-6683 | 02-3408-6682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광장동) |
| | 송파 | 송파구 | 02-3433-5841 | 02-3433-5858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공단 (신천동) |
| | 강동하남 | 강동구, 하남시 | 02-480-8872 | 02-480-8833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성내동) |
| | 서울남부지역 본부 |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 02-3416-6082 | 02-3416-6082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회관 3호선신사역1번출구 (논현동) |
| | 강남역삼 |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 02-2186-4026 | 02-2186-4021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2, 4층 KT선릉타워 (대치동) |
| | 서초 | 서초구 | 02-3415-0313 | 02-3415-0984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 엘타워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 (양재동) |
| | 관악 | 관악구 | 02-6934-2022 | 02-6934-2022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4층 경동제약빌딩 (봉천동) |
| | 서울북부지역 본부 | 서대문구, 마포구 | 02-2176-9816 | 02-2176-9808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9층, 충정로사옥(충정로3가) |
| | 구로금천 | 구로구, 금천구 | 02-2085-1411 | 02-2085-1421 |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가산동) |
| | 영등포 | 영등포구 | 02-2629-2333 | 02-2629-2312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5층 동양타워빌딩 (당산동4가) |
| | 강서 | 강서구 | 02-2086-7110 | 02-2086-7118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7, 5층 화인빌딩 (등촌동) |
| 은평 | 은평구 | 02-350-5537 | 02-350-5525 |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한화생명빌딩 (불광동) | |

| 시도 | 지사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 주 소 |
|----|------------|--------------------|--------------|--------------|--|
| 서울 | 양천 | 양천구 | 02-6345-9023 | 02-6345-9020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해누리타운 (신정동) |
| | 용산 | 용산구 | 02-6220-2212 | 02-6220-2212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9, 3층 고려빌딩 (갈월동) |
| | 동작 | 동작구 | 02-6935-8421 | 02-6935-8421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노량진동) |
| 부산 | 부산 지역본부 | 부산진구, 연제구 | 051-797-7021 | 051-797-7030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연산동) |
| | 중부산 | 중구, 동구, 영도구 | 051-660-3227 | 051-660-3220 | 부산 중구 충장대로 7, 3층 교보 생명빌딩 중앙동사옥 (중앙동4가) |
| | 서부산 | 사하구, 서구 | 051-290-3523 | 051-290-3524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 삼성전자빌딩 (하단동) |
| | 북부산 | 강서구, 북구 | 051-603-1256 | 051-603-1256 | 부산 북구 기차로 12, 4층 이수타워 (덕천동) |
| | 동래금정 | 동래구, 금정구 | 051-550-7544 | 051-550-7556 |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
| | 남부산 | 남구, 수영구 | 051-793-1074 | 051-793-1074 |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1,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광안동) |
| | 동부산 | 해운대구, 기장군 | 051-610-6391 | 051-610-6391 |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우동) |
| | 부산사상 | 사상구 | 051-792-5341 | 051-792-5345 |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괘법동) |
| 대구 | 대구 지역본부 | 달서구 | 053-589-4528 | 053-589-4521 |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이곡동) |
| | 서대구 | 서구, 북구 | 053-380-3029 | 053-380-3027 | 대구 북구 고성로 141, 1,2층 KT 북대구지사 (고성동3가) |
| | 동대구 | 동구 | 053-430-7825 | 053-430-7829 | 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 우체국 (입석동) |
| | 대구수성 | 수성구, 중구, 남구 | 053-750-9184 | 053-750-9184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
| | 대구 달성고령 | 달성군, 고령군 | 053-470-1535 | 053-470-1535 |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1,2층 KT달성빌딩 (현풍면) |
| 인천 | 남동연수 | 남동구, 연수구 | 032-451-0904 | 032-451-0926 |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3층 국민 연금인천회관 (구월동) |
| | 서인천 | 서구 | 032-560-0531 | 032-560-0531 | 인천 서구 서곶로 284, 2-3층 새터빌딩 (심곡동) |
| | 부평계양 | 부평구, 계양구 | 032-500-8146 | --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
| | 남인천 |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 032-770-3546 | 032-770-3541 | 인천 남구 경인로 351, 7층 한화 생명빌딩 (주안동) |

| 시도 | 지사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 주 소 |
|----|--------|---------------------|--------------|--------------|--|
| 광주 | 광주지역본부 | 서구, 광산구 | 062-958-2077 | 062-958-2084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우산동) |
| | 동광주 |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 062-230-0722 | 062-230-0720 | 광주 동구 금남로 154-1,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금남로5가) |
| | 북광주 | 북구, 담양군, 장성군 | 062-520-8129 | 062-520-8116 | 광주 북구 무등로 239, 10층 한국시멘트빌딩 (중흥동) |
| 대전 | 대전지역본부 | 서구, 논산시, 계룡시 | 042-480-4930 | 042-480-4830 | 대전 서구 문정로 6, 4층 국민연금공단대전지사 (탄방동) |
| | 동대전 | 중구, 동구, 금산군 | 042-720-4057 | 042-720-4054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4층 삼성생명빌딩 (신화동) |
| | 북대전 | 대덕구, 유성구 | 042-670-1016 | -- |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4층 우성빌딩 (오정동) |
| 울산 | 남울산 | 남구, 울주군 | 052-226-2153 | 052-226-2150 | 울산 남구 중앙로 179, 4층 한화생명빌딩 (신정동) |
| | 동울산 | 중구, 동구, 북구 | 052-290-6118 | 052-290-6171 | 울산 중구 변영로 470,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반구동) |
| 세종 | 세종 | 세종 특별자치시 | 044-715-1634 | 044-715-1634 | 세종 한누리대로 486, 3층 NH농협세종통합센터 (어진동) |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 031-229-4044 | 031-229-4193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 번길 19, 3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인계동) |
| | 안양과천 | 안양시, 과천시 | 031-420-2022 | 031-420-2091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0층 지스퀘어 (호계동) |
| | 성남 | 성남시 | 031-778-0222 | 031-778-0201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야탑동) |
| | 이천여주 | 이천시, 여주시 | 031-886-8172 | 031-886-8171 |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 하나빌딩 (중리동) |
| | 평택안성 | 평택시, 안성시 | 031-659-0833 | 031-671-6919 | 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 5층 삼성생명 (평택동) |
| | 안산 | 안산시 | 031-481-7724 | 031-481-7724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고잔동) |
| | 광명 | 광명시 | 02-2610-2861 | 02-2610-2861 | 경기 광명시 철산로 5, 3층 웅창빌딩 (철산동) |
| | 부천 | 부천시 | 032-610-2346 | 032-610-2358 |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 12층 한화생명빌딩 (중동) |
| | 고양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 031-920-5435 | 031-920-5440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KT프라자 (마두동) |
| | 고양덕양 | 고양시 덕양구 | 031-927-3233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플4로 7, 5층(원흥동) |

| 시도 | 지사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 주 소 |
|----|-----------|----------------------|---------------|---------------|---|
| 경기 | 의정부 |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 031-828-3778 | 031-828-3611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 삼성생명빌딩 (의정부동) |
| | 구리 남양주 |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 031-550-5835 | 031-550-5895 |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한화생명빌딩 (교문동) |
| | 용인 | 용인시 | 031-288-1361 | 031-288-1329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역북동) |
| | 화성오산 | 화성시, 오산시 | 031-229-6075 | 031-229-6050 |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5층 금강빌딩 (병점동) |
| | 시흥 | 시흥시 | 031-488-2744 | 031-488-2740 |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 한국산업은행 (정왕동) |
| | 군포의왕 | 군포시, 의왕시 | 031-390-8011 | 031-390-8010 | 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대주빌딩 (산본동) |
| | 파주 |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 031-956-3658 | 031-956-3651 | 경기 파주시 새꽃로 1, 3층 파주우체국 (금촌동) |
| | 포천철원 | 포천시, 철원군 | 031-540-8074 | 031-540-8074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5층 송우웰빙타운 (소흘읍) |
| | 경기광주 | 광주시 | 031-8026-3053 | 031-8026-3053 |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정민빌딩 (송정동) |
| | 북수원 |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 031-8007-2243 | 031-8007-2243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KT 수원지사 빌딩 별관 (영화동) |
| | 김포강화 | 김포시, 강화군 | 031-8048-1352 | 031-8048-1356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3층 (장기동) |
| 강원 | 강릉 |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 033-640-9374 | 033-640-9303 | 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 (포남동) |
| | 춘천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 033-259-7737 | 033-259-7730 | 강원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회관 5,6층 (퇴계동) |
| | 원주 |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 033-749-8419 | 033-749-8443 |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9층 원주시청 (무실동) |
| | 삼척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033-571-2153 | 033-571-2150 | 강원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 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교동) |
| | 홍천 |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 033-439-5407 | 033-439-5401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 KT홍천사옥 (홍천읍) |
| 충남 | 천안 | 천안시 | 041-550-8884 | 041-550-8884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청당동) |
| | 아산 | 아산시 | 041-420-2344 | | 충남 아산시 충무로 22, 2층, 3층 (온천동, 유엘시티) |
| | 홍성 |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 041-630-8125 | 041-630-812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2-4층 대왕빌딩 (홍성읍) |
| | 보령 |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 041-930-6686 | 041-930-6686 | 충남 보령시 동현로 27, 국민연금 보령회관 (동대동) |

| 시도 | 지사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 주 소 |
|----|------|-------------------------|--------------|--------------|---|
| 충남 | 공주부여 | 공주시, 부여군 | 041-850-3848 | 041-850-3848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
| | 서산태안 | 서산시, 태안군 | 041-419-3037 | 041-419-3030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4층 동일타워 (예천동) |
| 충북 | 청주 | 청주시 | 043-251-5071 | 043-251-520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시사 (서문동) |
| | 충주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043-840-0740 | 043-840-0749 | 충북 충주시 국민대로 242,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 (금릉동) |
| | 옥천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043-730-2747 | --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3,4층 하나로타워 (옥천읍) |
| | 증평 |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 043-820-7128 | 043-820-7125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3층 (증평읍) |
| 전남 | 목포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 061-240-3323 | 061-240-3305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KT 목포사옥 (호남동) |
| | 해남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 061-530-2312 | 061-530-2317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국민연금해남회관 (해남읍) |
| | 순천 |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 061-729-3068 | 061-729-3068 |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순천회관 (연향동) |
| | 여수 | 여수시 | 061-660-5526 | 061-660-5522 | 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회관 (공화동) |
| | 나주 |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 061-820-0016 | 061-820-0013 |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 1층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
| 전북 | 전주완주 | 전주시, 완주군 | 063-270-5348 | 063-270-534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서신동) |
| | 익산군산 | 익산시, 군산시 | 063-850-0346 | 063-850-0346 | 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익산회관 (주현동) |
| | 정읍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063-530-5821 | 063-530-5822 | 전북 정읍시 총정로 97, 국민연금정읍회관 (상동) |
| | 남원순창 | 남원시, 순창군 | 063-620-3420 | 063-620-3422 | 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 남원회관 (동총동) |
| | 진안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063-430-3512 | 063-430-3516 |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국민연금진안사옥 (진안읍) |
| 경남 | 창원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원군 | 055-278-9025 | 055-278-902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4, 국민연금공단창원지사 (신월동) |
| | 김해밀양 | 김해시, 밀양시 | 055-320-8374 | 055-320-8374 |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4층 국민연금공단김해밀양지사 (부원동) |

| 시도 | 지사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 주 소 |
|----|------|------------------------|--------------|--------------|---|
| 경남 | 통영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055-650-8519 | 055-650-8519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 (광도면) |
| | 진주 |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 055-760-0627 | 055-760-0629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
| | 마산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055-290-4518 | 055-290-4519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
| | 거창 |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 055-940-4522 | 055-940-452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거창읍) |
| | 양산 | 양산시 | 055-371-1516 | 055-371-1516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1-3층 국민연금공단양산회관 (물금읍) |
| | 사천남해 | 사천시, 남해군 | 055-830-0828 | 055-830-0828 |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대로 13 (용현면) |
| 경북 | 경주영천 | 경주시, 영천시 | 054-770-3950 | 054-770-3911 |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KT 경주지사 (성동동) |
| | 포항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054-280-0883 | 054-280-0883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KT포항지사 (대도동) |
| | 안동 |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 054-850-9022 | 054-850-9028 | 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옥동) |
| | 문경 |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 054-550-3314 | 054-550-3310 | 경북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모전동) |
| | 구미 |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 054-450-8525 | 054-450-8525 |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 (송정동) |
| | 영주봉화 | 영주시, 봉화군 | 054-639-8008 | 054-639-8001 |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2~4층 (영주동) |
| | 김천성주 | 김천시, 성주군 | 054-420-1632 | 054-420-1631 |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3층 김천상공회의소 (신음동) |
| | 경산청도 | 경산시, 청도군 | 053-722-5043 | 054-516-7001 |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6층 KT 경산빌딩 (사정동) |
| 제주 | 제주 | 제주시 | 064-720-4002 | 064-720-4139 |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민연금제주회관 (도남동) |
| | 서귀포 | 서귀포시 | 064-800-4533 | 064-800-4534 |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5층 축산업협동조합 (동홍동) |

